

북핵 폐기 한반도 모델

: 기본원칙과 추진방향

전성훈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북핵 폐기 한반도 모델

: 기본원칙과 추진방향

| 전성훈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북핵 폐기 한반도 모델

: 기본원칙과 추진방향

인 쇄 2007년 12월

발 행 2007년 12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평화기획연구소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3

(팩시밀리) 901-2572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도서출판 늘품 (2275-5326)

인 쇄 처 도서출판 늘품

가 격 비매품

© 통일연구원, 2007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
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 734-6818 ·사무실: 394-0337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

북핵 폐기 한반도 모델: 기본원칙과 추진방향 / 전성훈. --

서울 : 통일연구원, 2007

p. ; cm. -- (KINU 정책연구시리즈; 07-08)

ISBN 978-89-8479-450-4 93340 : 비매품

349.9-KDC4
327.1747-DDC21

CIP2007004151

북핵 폐기 한반도 모델
: 기본원칙과 추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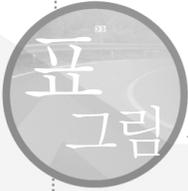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I. 북핵 폐기의 딜레마	1
1. 대북 안전보장의 딜레마	2
2. 북한 체제 공고화의 딜레마	9
II. 기본원칙	13
1. 위협중심 접근	14
2. 신속성과 완전성 추구	16
III. 전략적 추진방향	21
1. 핵폐기 4단계	22
2. 예상쟁점과 대응방향	27

IV. 북핵 폐기를 위한 대북전략	51
1. 당근과 채찍의 병행	53
2. 국제사회의 상식과 규범 준수	55
참고문헌	59
최근 발간자료 안내	61



목차

- <표 III-1> 북핵 폐기·검증 과정에서 각국의 바람직한 역할 .. 46
- <그림 I-1> 핵폐기 대상국가의 받는 위협과
주는 위협의 상관관계 비교 5
- <그림 I-2> 남북한·미국 안보 삼각구도의 변화 가능성 6



북핵 폐기의 딜레마

북핵 폐기를 완료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한국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딜레마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 하나는 군사적 차원의 대북 안전보장의 딜레마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적 차원의 북한 체제 공고화의 딜레마이다. 대북 안전보장의 딜레마는 북핵 폐기를 위한 보상 차원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군사적인 안전을 보장해주는 것이 오히려 남한의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 체제 공고화의 딜레마는 핵폐기의 대가로 제공되는 정치, 경제적인 보상이 핵개발의 근본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의 기존체제를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듦으로써 북한의 진정한 변화를 저해하고 핵개발의 동기를 다시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핵 폐기를 위한 한반도 모델의 주요 목표는 이상의 두 가지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과 방안을 담아내는 것이어야 한다. 아래에서는 평화적인 핵폐기의 주요 사례로 인용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리비아의 상황과 한반도의 상황을 비교·분석하면서 북핵 폐기의 두 가지 딜레마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1. 대북 안전보장의 딜레마

북핵 위기가 발생한 한반도가 유럽의 우크라이나 그리고 중동의 리비아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남북한의 군사적인 대치상태이다. 우크라이나와 리비아의 경우에는 두 나라의 핵무기 개발로 인해서 즉각적으로 심각한 안보위협을 받을 수 있는 경쟁관계에 있는 상대국가가 존재하지 않았다. 유럽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핵개발에 신경을 쓰겠지만 핵강대국인 러시아가 특별한 위협을 느끼지는 않을 것이다. 중동에서는 이스라엘이 리비아의 핵개발에 전략적인 영향을 받기는 하겠지만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리비아의 핵개발이 즉각적이고 심각한

안보위협을 야기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남북한이 첨예한 군사적인 대치상태에 있는 한반도는 인도와 파키스탄이 경쟁하고 있는 남아시아와 더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핵 폐기의 대가로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을 강화하면 할수록 상대적으로 남한의 안보가 약화되고 한반도의 군사적인 불안정은 높아지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특히 북한이 요구하는 안전보장의 초점이 남한에게 안보 공약을 제공하고 있는 미국의 군사전략과 행동반경을 제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과도한 안전보장 요구를 들어주는 경우에는 한·미 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남한의 안보를 약화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대북 안전보장의 딜레마는 아래의 <그림 I-1>을 토대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세로축은 안전보장을 제공받아야 한다고 요구하는 핵개발 국가가 해당지역과 역내 다른 국가들에게 ‘주는 안보적인 위협의 정도’를 표시한다. 반면에 가로축은 핵개발 국가가 안전보장을 제공해주도록 요구하는 대상국으로부터 ‘받는 안보위협의 정도’를 나타낸다. <그림 I-1>의 왼쪽은 우크라이나와 리비아의 경우를 나타내고 있다. 두 나라 모두 안전보장을 제공해주도록 요구하는 국가(우크라이나의 경우에는 러시아와 미국, 리비아의 경우에는 미국)로부터 받는 안보위협이 줄어들게 되면, 핵폐기 약속을 지키는 것은 물론 테러 등 국제평화를 저해하는 기존의 호전적인 입장을 버리고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함으로써, 두 나라가 역내의 다른 국가들과 국제사회에 주는 위협의 정도도 함께 줄어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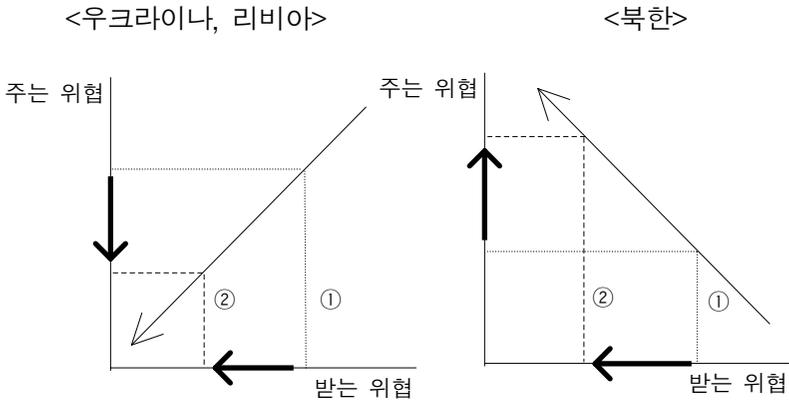
반면에 <그림 I-1>의 오른쪽은 북한의 경우를 나타낸다. 북한이 안전보장을 제공해주도록 요구하는 미국으로부터 받는 안보위협이 줄어들게 되면, 핵무기가 폐기됨으로써 남한에 대한 중요한 안보위협 요인이

I
II
III
IV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남한에 제기하는 다음과 같은 전통적인 안보위협 요인들은 그대로 존재하게 된다: 국제적인 통제를 받지 않고 있는 화학·세균무기, 수도권을 사정권에 두고 있는 전방에 배치된 장사 정포, 계속 현대화되고 있는 미사일, 기습침투가 가능한 특수전부대 등. 따라서 북핵 폐기가 이러한 전통적인 안보위협의 제거와 병행 추진되지 않는다면 핵폐기의 대가로 대북 안전보장을 제공하면서 초래되는 주한미군 전력의 변화 내지는 약화가 한·미 동맹의 대북 억지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전통적인 안보위협 요인들이 핵무기가 사라짐으로써 북한에게는 더 중요한 전략적 자산으로 부상하고 동시에 한국에게는 더 중요한 군사위협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 제공으로 인해서 대북 억지력은 약화되는 반면에 북한의 전통적인 안보위협 요인들의 비중은 더 커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국의 안보상황은 북한의 핵보유 때와 비교할 때 크게 개선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북핵 폐기의 대가로 미국이 지불하는 대북 안전보장의 비용이 크면 클수록 미국의 대북 억지력과 한·미 동맹에 의거한 대남 안보공약의 강도는 약화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그림 I-1>의 오른쪽은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안전보장을 제공받아서 받는 위협이 줄어드는 반면에 전통적인 안보위협 요인들의 정치·군사적 중요성과 가치가 높아지고 미국의 대남 안보공약은 약화됨으로써 상대적으로 남한에 주는 안보위협은 증가할 수 있다는 역설적인 상황을 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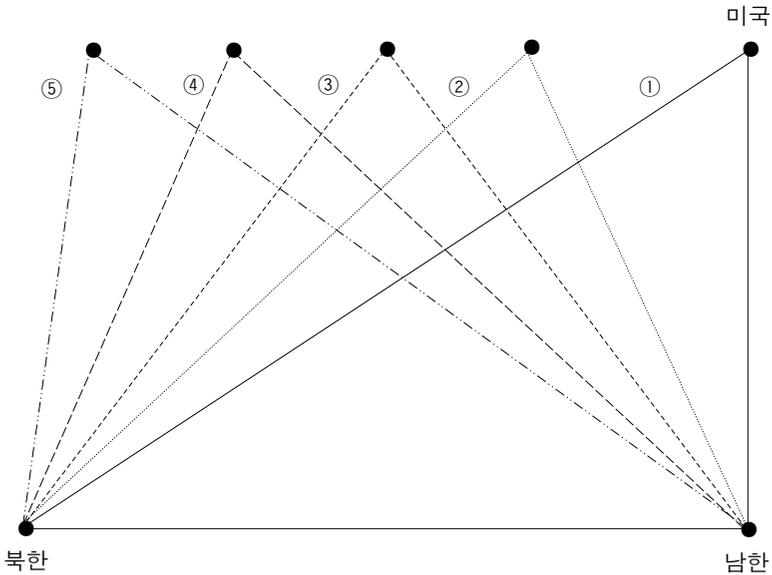
<그림 I-1> 핵폐기 대상국가의 받는 위협과 주는 위협의 상관관계 비교



미국의 대북 안전보장 제공으로 인한 대남 안보공약 약화 가능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겠다. 우크라이나와 리비아 사례가 북한 핵문제와 차별화되는 핵심적인 요소는 핵폐기 국가에게 안전보장을 해주는 국가(우크라이나의 경우 미국·러시아, 리비아의 경우 미국)가 핵폐기 국가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동맹국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의 경우에는 미국이 핵폐기국인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동맹국인 한국이 있다는 점이 다르다. 북핵 폐기를 위해서 미국이 북한에게 안전보장을 해주어야 하지만 동시에 미국이 보호해야 할 동맹국인 한국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즉 남북한과 미국의 “안보 삼각구도”(Security Triangle)가 한반도 특성이기 때문이다. <그림 I-2>는 남북한과 미국 사이의 안보 삼각구도가 변화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보여주고 있다.

I
II
III
IV

<그림 I-2> 남북한·미국 안보 삼각구도의 변화 가능성



- 시나리오 1: 북·미 > 남북 > 한·미
- 시나리오 2: 남북 > 북·미 > 한·미
- 시나리오 3: 남북 > 북·미 = 한·미
- 시나리오 4: 남북 > 한·미 > 북·미
- 시나리오 5: 한·미 > 남북 > 북·미

나라와 나라 사이의 선의 길이가 양국 간의 정치적 갈등과 군사적 긴장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가정한다. 즉 양국 사이의 선이 길수록 두 나라 사이의 갈등과 긴장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파악한다. 관찰의 주안점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미 및 한·미관계이기 때문에 남북 간의 갈등과 긴장은 고정된 것으로 전제한다.

(시나리오 ①)은 북·미간의 갈등과 긴장의 정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 남북한, 마지막으로 한·미간의 순서를 따른다. 현재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시나리오 ②)는 북·미관계가 진전되면서 남북간의 갈등과 긴장이 가장 높은 상황을 나타낸다. 북한이 불능화에 성의를 보이고 핵폐기 단계

에 진입하게 되면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다. (시나리오 ③)은 북·미관계가 더욱 진전되어서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북·미관계와 한·미관계 사이에 갈등과 긴장의 수준에서 별 차이가 없게 되는 상황이다. 북핵 폐기의 진전에 탄력을 받아서 북·미관계는 계속 진전되는 반면에 한·미관계는 담보상태이거나 더 나빠지는 경우에 가능한 시나리오이다. (시나리오 ④)는 남북사이의 갈등과 긴장에 변화는 없지만 시나리오 ③에 비해서 한·미관계가 북·미관계보다 더 나빠지는 경우를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시나리오 ⑤)는 한·미관계가 가장 나빠지는 경우로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시나리오이다.

우크라이나·리비아와 한반도의 사이에는 동맹의 존재로 인한 안전보장의 딜레마라는 안보적 특성 이외에도 역사와 전통, 지정학적 질서, 대결과 협력이 공존하는 정치적 상황 등 많은 차이점이 있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중앙아시아와 동유럽지역에 군사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국가가 없었으며 단지 러시아로부터 안보위협을 느꼈을 뿐이다. 서유럽에서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위협하는 국가는 없었고, 동유럽에서도 우크라이나에 위협을 가하는 적대적인 국가는 없었다. 단지 러시아만이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었다. 우크라이나가 특정 국가를 위협하는 상황도 아니었다. 우크라이나의 핵무기는 특정국가에 대한 구체적인 위협을 가한다기 보다는 지역의 안정을 해치고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안정 요인으로 간주되었고, 오판이나 오해 혹은 사고에 의한 우발적인 사용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고 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가 잠재적인 위협국인 러시아뿐만 아니라 미국에 대해서도 안전보장을 요구한 것은 미국의 침략위협 때문이라기보다는 러시아의 안전보장을 재확인하는 안전장치로서 미국을 활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우크라이나의 핵무

I
II
III
IV

기는 러시아에 대한 억지력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했다. 우크라이나가 안전보장을 요구한 러시아나 미국이 이 지역에 우크라이나의 군사위협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동맹국을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중동의 경우에는 미국이 리비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동맹국인 이스라엘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스라엘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한국과 다르다. 우선 이스라엘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서 리비아의 핵무기에 대한 적절한 억지수단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핵을 보유하지 않고 미국의 핵우산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한국이 북한의 핵이라는 비대칭적 위협에 노출된 것과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둘째, 남북한과 달리 이스라엘과 리비아는 지리적으로 인접해있지 않기 때문에 설혹 리비아가 핵보유에 성공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스라엘에 주는 위협이 북한 핵이 남한에 주는 위협만큼 크지는 않을 것이다. 셋째, 재래식 전력의 측면에서 볼 때, 이스라엘은 미국의 지원군이 없이도 리비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미국의 군사적 협력이 없이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즉 안전보장의 차원에서 북한을 상대하는 한국의 대미 의존도가 리비아를 상대하는 이스라엘에 비해 훨씬 크다. 이런 사실은 한·미 동맹과 미국의 대남 방위공약이 미국의 대북 안전보장에 따라서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만약 북핵 폐기를 위해 대북 안전보장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미국의 대북 군사억지태세가 약화되고 한·미 동맹이 이완되는 가운데 북한이 남한에 제기하는 전통적인 안보위협 요인들이 그대로 존재한다면 오히려 한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은 더 높아질 수 있다.¹ 북핵이 한국

¹ 노무현 정부 5년간 한·미 동맹의 쇠퇴 원인과 치유방안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Cheon Seonwhun, "North Korea and the ROK-U.S. security alliance," *Armed Forces & Society*, Vol. 34, No. 1, October 2007, pp. 5~28.

의 안보를 위협하는 큰 요소임에는 분명하지만 북한은 핵 이외에도 남한을 위협할 수 있는 막강한 군사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우크라이나 혹은 리비아에 적용했던 방식을 한반도에 무분별하게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게 된다. 북핵 폐기과정에서 예상되는 대북 안전보장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핵 폐기의 대가로 제공되는 미국의 대남 안보공약과 대북 억지태세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고, 핵무기 이외에 북한이 제기하는 전통적인 안보위협 요인들도 포괄적으로 해결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북한 체제 공고화의 딜레마

북핵 폐기 과정에서 한국이 직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딜레마는 핵폐기의 대가로 제공되는 보상이 북한 체제를 공고하게 만들으로써 핵개발의 근본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 체제의 호전적이고 대결적인 근본 속성을 바꾸는데 실패하는 것은 물론 체제가 강화된 북한이 다시 핵개발의 유혹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핵 폐기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북한에 다양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은 몸에 비유하자면 병의 증상 하나를 해결하는 대증요법과 유사하다. 즉 몸에 해당하는 북한 체제가 야기하는 여러 가지 병적 현상 가운데 하나인 핵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분히 기능주의적인 대증요법인 것이다.

전적으로 핵폐기에만 초점을 맞춘 북핵 해법은 재래식 군사력 위협, 화학·세균무기와 미사일 등 비재래식 군사위협과 마약·위폐 제조와 같은 불법 활동 그리고 인권문제 등 북한이 야기하는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함께 해결할 수 없다. 결국 몸에 해당하는 북한 체제의 체질과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만이 여러 가지 병적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I
II
III
IV

가장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와 개혁·개방을 유도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책만이 북한 체제가 야기하는 전통적인 안보위협과 초국가적 범죄행위 그리고 인권유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이 결여된 북핵 해법은 북핵문제의 근본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체제의 체질변화를 가져오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제2, 제3의 북핵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 체제의 긍정적인 변화가 전제되거나 이러한 변화를 보장할 수 없는 대북 경제지원 역시 남한을 북한 체제 공고화의 딜레마에 빠지게 만들 것이다. 북핵 폐기 과정이 시작되면 남한의 대북지원과 경제협력도 핵폐기 속도에 맞춰서 가속화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국내외적으로 강하게 제기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 체제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지향하는 쪽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할 것이라는 점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핵폐기의 대가로 선불리 경제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북한의 공산주의 세습체제를 강화시키는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다. 핵무기는 폐기시킬 수 있겠지만 핵무기를 개발한 당사자이자 문제의 근원인 북한 정권을 공고하게 해줌으로써 결과적으로 김정일 정권의 변화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 이러한 해법은 북핵문제의 근본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핵개발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고 더 나아가 추가 핵개발을 고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체제 변화가 전제되지 않는 북핵 폐기 시도는 완수하기가 그만큼 어려운 것은 물론 핵폐기가 완수된다고 해도 한국의 안보가 향상된다고 보장할 수 없다. 오히려 보상을 통해서 체제가 강화된 북한이 핵폐기를 지연시키면서 한반도의 안보질서를 교란하려 할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다. 북한 정권의 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핵무기는 북한 체제를

유지하고 대남 우위를 점유하면서 주한미군의 영향력을 제거하는 결정적인 대남 협박수단으로 남을 것이다.

I

II

III

IV

북핵 폐기 한반도 모델



기본원칙

북핵 폐기를 완료하고 한반도 비핵화 임무를 완수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원칙을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는 북한 핵이 초래하는 위협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둘째는 북핵 폐기의 속도는 신속하게 그 정도는 불가역적으로 완전하게 달성하는 것이다.

1. 위협중심 접근

우크라이나와 리비아의 경우에는 두 나라의 핵무기로부터 위협을 받는 명백하고 구체적인 당사자가 없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포함해서 구소련의 공화국들을 위협하는 상황은 아니었고, 리비아의 경우에도 핵무기를 개발해서 이스라엘을 위협하겠다는 명백한 징후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핵을 보유했거나 개발한 당사국인 두 나라의 핵폐기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는 단순한 해결방식이 가능했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의 경우에는 북한 핵에 의해 명백하고 구체적인 위협을 받는 당사국인 한국이 존재한다. 특히 북한이 안전보장을 요구하는 미국이 한국에 대한 안보공약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대북 안전보장이 대남 안보 공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안보 3각 관계’가 북핵 폐기의 핵심적인 구조적 요건인 것이다. 또한 핵무기를 개발해서라도 체제를 지키겠다는 북한 정권의 속성이 바뀌고 체질이 개선되지 않는 한 제2, 제3의 북핵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북핵 폐기를 둘러싼 이상의 상황적 특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첫째, 북핵 폐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당사국은 한국이며, 따라서 당사자인 한국의 입장과 역할이 최우선적으로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핵무기는 대남위협的重要한 일부분일 뿐, 핵무기가 폐기된다고 해서 남한에 대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북한의 대남 군사위협을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더 바람직하다는 사실이다. 셋째, 현재의 북한 체제가 개혁과 개방을 통해서 체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체제로 거듭나는 것만이 북핵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점이다.

북핵 폐기를 위한 한반도 모델은 평화협정의 체결이나 평화체제의 구축과 같은 기존 제도의 변경과 새로운 제도의 형성에 중점을 둔 방식이 아니라 한국에 대한 안보위협을 제거하고 긴장의 수준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데 초점을 맞춘 “위협중심 모델”(Threat-Based Model)이어야 한다.

제도의 변경과 형성은 기존질서의 변화에 따른 안보적 불확실성을 야기할 위험이 있고, 구체적인 실천조치가 보장되지 않는 경우 오히려 안보를 저해할 위험을 수반한다. 반면에 위협의 제거에 초점을 맞춘 접근은 북핵 위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위협을 제거함으로써 평화를 달성한다는 점에서 보다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접근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일단 북핵 위협이 제거되면 새로운 안보상황이 조성될 것이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다. 즉 제도의 형성과 변경은 북핵 위협 제거에 따라 새롭게 조성된 안보환경을 확인하고 보장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제도의 변경과 형성을 위협의 제거 이후로 미루는 위협중심 모델은 핵을 빌미로 기존의 안보구도와 질서를 무력화시키려는 북한의 전략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접근방식이기도 하다.

I
II
III
IV

2. 신속성과 완전성 추구

북핵 폐기는 가급적 신속하게 달성되어야 한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이 북한의 핵위협에 노출되는 시간이 연장된다는 것을 뜻한다. 북한은 지난 1990년대 남북대화에서 ‘서울이 불바다가 될 수 있다’고 위협한 적이 있고, 2007년 NLL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했을 때도 전면전이 벌어질 수 있다고 위협한 적이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갖기 이전의 전쟁 위협은 핵무기를 개발한 후의 위협과는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다. 2008년 출범하는 신정부는 제17대 대통령 임기 말인 2012년까지 북핵 폐기 임무를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제17대 대통령 임기 5년은 남북관계와 북핵 폐기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첫째, 2012년은 2008년에 출범할 한국의 제17대 대통령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이자 2009년에 출범할 미국 신행정부의 제1기가 종료되는 시점이다. 즉 향후 5년은 한·미 양국의 새로운 행정부의 임기가 대부분 겹치면서 함께 종료되는 기간인 것이다. 둘째, 2012년은 2008년에 시작되는 한국 국방부의 ‘국방중기계획’ 완료시점과도 일치한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집행되는 ‘국방중기계획’은 북한 핵으로 인해 조성된 남북한 간의 비대칭적 전략관계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어떤 형태로든 담을 수밖에 없다. 즉 향후 5년은 북한의 핵전력과 이에 대응한 남한의 대비태세가 맞물려 남북 사이에 새로운 전략적 관계가 만들어지는 시기이다. 셋째, 2012년은 또한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권이 환수되는 시점이다. 정치적, 군사전략적, 심리적 차원에서 한·미 동맹 구조에 상당한 변화가 이뤄지는 시기가 바로 향후 5년간인 것이다. 한·미 동맹구조의 변화는 북핵 문제 해결에 여러 가지 형태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영향

은 한·미 동맹의 공고화 여부에 따라서 북핵 폐기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넷째, 2012년은 소위 “꺾어지는 해”(5년 혹은 10년 단위)로서 북한의 대내정치적으로 많은 의미를 갖는 해이기 때문에 이 시점을 목표로 북한 내부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우선 2012년은 1912년 4월 15일에 태어난 김일성의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이며 1942년 2월 16일에 출생한 김정일의 나이 70세가 되는 해이기도 하다. 또한 김정일이 원수로 추대된 지 20주년(추대일, 1992년 4월 20일), 당 총비서로 추대된 지 15주년(추대일, 1997년 10월 8일)이 되는 해이다. 아울러 1932년 4월 25일 만들었다고 선전하는 조선인민군 창건 80주년이 되는 시점이다. 2012년이 북한의 권력구조에서 갖는 이상의 의미를 고려할 때, 앞으로 5년간 후계구도를 포함해서 북한내부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핵무기는 북한 정권의 든든한 자산으로서 정치·군사·외교적으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핵 폐기는 완전하게 달성되어야 한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 CVID) 원칙을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완전하다는 것은 과거 제1차 북핵 위기 때의 제네바 합의와 같이 북한의 핵 활동을 동결하는 선에서 그치거나 미진한 부분을 후일의 해결과제로 남겨두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볼튼 차관보가 밝힌 바와 같이,² 완전한 폐기를 이루기 위해서 플루토늄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HEU 프로그램의 모든 요소를 폐기해야 한다. 북한은 2·13 합의에 의거해서

²- *The Bush Administration's Nonproliferation Policy: Successes and Future Challenges*, Testimony by Under Secretary of State for Arms Control and International Security John Bolton to the House International Relations Committee, March 30, 2004.

제출해야 하는 신고보고서에서 HEU와 관련해서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자세한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검증가능하다는 것은 북한당국이 합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할지 확신할 수 없다는 대북 불신에 바탕을 두고, 합의된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실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돌이킬 수 없다는 말은 북한이 다시 핵개발을 시도할 수 있는 인적, 물적, 기술적 하부구조와 능력을 발본색원함으로써 북한에서 핵무기 개발의 싹을 자르고 뿌리를 뽑겠다는 뜻이다. 다만 북한이 핵폐기를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게 실현한다는 전제하에,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이용 권한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활동까지도 포기해야 돌이킬 수 없는 폐기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볼튼 차관의 입장보다는 유연한 것이다.³

CVID를 통해 북한의 핵무기 개발 능력을 발본색원하려는 중요한 이유는 불량국가들의 합의위반에 대한 경계감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은 걸프전 이후 핵·화학·세균무기와 사정거리 150km 이상이 되는 미사일의 개발을 완전히 금지하는 유엔제재를 받았다. 그러나 이라크는 이 규정을 악용해서 북한 등으로부터 중·장거리 미사일 도입을 추진했었다.⁴ 이러한 사례들을 감안해서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북한이 더 이상 핵을 갖고 장난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CVID

³- Ibid.

⁴- James Risen, "Russian engineers reportedly gave missile aid to Iraq," *New York Times*, March 5, 2004. 부시 행정부의 대 이라크 정보수집능력을 비판하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미 상원 정보위원회도 북한과 이라크 사이에 미사일 기술 거래시도가 있었다는 정보는 신뢰했으며, 2001년 3명의 이라크 장교들이 북한을 방문해서 당시 북한에 머물던 시리아의 미사일 팀과 만났다는 새로운 사실을 공개했다. Dana Priest and Dafna Linzer, "Panel condemns Iraq prewar intelligence," *Washington Post*, July 10, 2004, p. A01. 상원정보위원회의 중간 조사결과는 다음을 참조하기 바란다. Select Committee on Intelligence, *Report on the U.S. Intelligence Community's Prewar Intelligence Assessments on Iraq*, Washington, D.C.: U.S. Senate, July 2004.

의 요체이다.

CVID는 부시 행정부 초기에 대북관계에서 원칙과 규범을 강조하는 입장이 구현된 원칙이지만, 부시 행정부 2기 들어서 2·13 합의를 기점으로 미국의 대북정책이 전술적인 변화를 보이면서 중요성이 떨어지고 있다. 부시 행정부의 대북 협상론자들이 CVID를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과거와 같이 CVID를 철저히 관철하겠다는 생각은 없는 듯하다. 그러나 한국의 신행정부는 CVID 원칙을 견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 북핵 폐기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CVID 이외에 다른 대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북핵 폐기를 완전하게 달성하는 것은 한국의 외교적, 과학기술적,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한국의 핵개발 의혹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신을 제거하고 이를 통해서 원자력 기술개발을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완전하고도 철저히 해소되고 이를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일이 필수불가결한 요건이다.

I

II

III

IV

북핵 폐기 한반도 모델



전략적 추진방향

북핵 폐기 한반도 모델의 초점은 북핵 폐기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두 가지 딜레마, 즉 대북 안전보장의 딜레마와 북한체제 공고화의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아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핵 폐기 과정에서 한국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들과 북한체제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들을 병행해서 실천해야 한다. 이러한 방안들은 물론 ‘위협중심 접근’과 ‘신속성과 완전성 추구’라는 두 가지 기본원칙에 토대를 두고 입안·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아래에서는 북핵 폐기 한반도 모델의 기본구도를 핵폐기 4단계로 정리하고, 각 단계별로 북한이 해야 할 의무사항, 이 과정에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쟁점 및 한국의 대응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핵폐기 4단계

본 연구는 2·13 합의와 9·19 공동성명이 이행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핵폐기 단계를 네 단계로 구분했다. 2·13 합의가 핵무기 폐기를 언급하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지만 그 자체가 주어진 현실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북핵 폐기를 위한 한반도 모델의 현실성과 적실성을 높이기 위해서 2·13 합의와 9·19 공동성명을 기반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가. 불능화·신고 단계

불능화·신고는 2·13 합의 제Ⅱ조 1항과 2항 및 제Ⅳ조에 근거해서 북한이 보유한 핵시설을 불능화하고 모든 핵프로그램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2007년 9월 1~2일 제네바에서 열린 제2차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회의를 마친 크리스토퍼 힐 미국대표는 북한이 2007년 말까지 모든



핵시설에 대한 불능화와 모든 핵프로그램에 대한 신고를 완료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⁵ 그러나 본 연구는 북한의 핵개발 역사를 돌이켜 볼 때, 한·미가 원하는 만큼의 철저한 불능화와 신고가 이뤄지는 데는 많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본다. 불능화·신고 단계는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도 꽤 걸리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이 불능화와 신고를 제한되고 불완전하게 이행할 가능성이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하며, 이로 인해 2·13 합의 이행에 많은 어려움이 초래될 가능성이 많다.

불능화·신고의 형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예상할 수 있다: ① 불능화 범위의 완전성 여부, ② 불능화 정도의 불가역성 여부, ③ 신고 범위의 완전성 여부. 이런 기준에서 볼 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형태의 불능화·신고가 실현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⁶

첫째, 모든 시설을 완전하게 불가역적으로 불능화 하지만 신고는 불완전하게 하는 형태이다. 불완전한 신고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한 가지 가능성은 플루토늄의 사용 내역은 핵무기 보유 규모를 파악하는 것과 직결되기 때문에 핵폐기와 연동된 사안이라는 이유를 들면서 핵폐기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 플루토늄에 대한 완전한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다. 또 다른 가능성은 비밀리에 HEU 프로그램을 지속할 목적으로 HEU에 관련된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다. 플루토늄과 HEU 모두에서 불완전한 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신고내용에 대한 검증이 뒤따라야 하는데, 신고가 완전하지 못하므로 검증도 모든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추진되지 못할 것이다.

5. 『연합뉴스』, 2007년 9월 3일.

6. 전성훈, “북핵 폐기 로드맵 (2008~2012): 향후 5년간의 예상과 우리의 대응,” 『북한 핵문제와 위기의 한국안보』,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창설 20주년 기념논문집 (서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7. 10), pp. 155~160.

둘째, 불능화의 대상으로 지목된 시설은 모두 불능화 하지만 나중에 재가동이 가능하도록 가역적 불능화를 시도하면서, 플루토늄과 HEU에 관한 일부 프로그램을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는 불안정한 신고를 하는 형태이다. 즉 북한이 플루토늄 프로그램을 전략적으로 포기하지만 향후 대미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가역적 불능화를 고집하고, 핵무기에 관련된다는 이유로 플루토늄에 대한 완전한 신고를 거부하면서 비밀리에 HEU 프로그램을 지속하는 상황이다. 불능화의 정도는 가역과 불가역 사이의 어중간한 상태가 될 것이다. 역시 신고가 완전하지 못하므로 신고내용에 대한 검증은 모든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 만큼 완벽하게 이뤄지지 못한다.

나. 핵폐기 협상 단계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실태를 파악하고 구체적인 폐기절차와 보상방안 등을 협상하는 단계이다. 9·19 공동성명은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핵심 목표로 명시하고 있으나 2·13 합의에는 합의 이행이 완료된 이후 핵무기 폐기를 개시하기까지의 절차와 시점에 대한 언급이 없다. 따라서 핵무기 폐기를 위한 별도의 협상과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북한의 핵전략과 과거 핵군축 협상의 사례를 볼 때, 핵폐기 협상도 많은 난관이 예상되고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단계라고 판단된다.

과거 핵군축의 사례도 북한 핵무기를 폐기하기 위한 협상이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모되는 어려운 협상이 될 것임을 시사한다. 핵무기확산금지조약, 즉 NPT의 경우 미국과 소련이 협상을 시작한 것은 1962년인데, 체결된 것은 6년 만인 1968년 7월 1일이며, 비준요건을 갖춰서 정식으로 발효된 것은 1970년 3월 5일이다. 협상 시작에서부터 발효까지 8년이 걸린 것이다. 아일랜드 정부가 NPT의 기본개념을 유엔결의안 형태로

제안하기 시작한 1958년부터 따진다면 NPT에 대한 구상에서부터 조약의 발효까지 12년이 소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냉전시대에 미국과 소련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운반수단을 규제함으로써 군사적인 긴장완화에 기여한 전략무기제한협정, SALT의 협상에는 4년이 걸렸다. 1968년 7월 1일 NPT에 서명하면서 양국이 협상을 개시한다고 선언한 이후 4년 만인 1972년 5월 26일 조약이 체결된 것이다.⁷ 조약이 체결된 지 6개월 후인 1972년 10월 3일 의회의 비준을 거쳐 발효되었다. SALT 협상은 존슨 행정부에서 시작되었지만 닉슨 행정부에서 결실을 보았다. 미국과 소련의 중거리핵미사일을 완전히 폐기한 중거리핵미사일폐기조약, 즉 INF는 1981년 11월 30일 협상이 시작되어서 6년 후인 1987년 12월 8일 체결되었고, 비준절차를 거쳐서 6개월 후인 1988년 6월 1일 발효되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핵폐기 협상을 통해서 조약을 체결하고 비준절차를 거쳐서 실제 핵폐기 이행단계로 넘어가기 전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6자회담의 진행과정만 봐도 핵폐기 협상 단계가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할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2003년 8월에 시작된 6자회담이 북핵폐기의 기본원칙을 담은 9·19 공동성명을 만들어내는데 2년 1개월이 소요되었고, 소위 핵폐기의 ‘초기조치’를 담고 있는 ‘2·13 합의’에 합의하는 데는 3년 6개월이 걸렸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 핵폐기 실시 단계

핵폐기 조약에서 규정된 절차와 방식 및 시간표에 따라서 실제로 핵탄두를 해체하고 관련 물질과 장비를 제거하는 단계이다. 절차와 방식만

⁷ Coit Blacker and Gloria Duffy, *International Arms Control: Issues and Agreement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4).

구체적으로 합의되면 이를 이행하는 것은 거의 기계적이고 실무적인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폐기해야 할 핵무기의 수가 많은 경우에는 핵폐기 단계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INF 조약은 체결 당시 미·소가 보유하고 있던 전체 중거리미사일 2,692기를 3년 내에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1991년 5월 21일 소련이 21기의 SS-20 미사일을 폐기함으로써 폐기절차를 완료한 바 있다.

다만 북한의 경우 핵전력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핵폐기 실시 단계는 불능화·신고나 핵폐기 협상 단계에 비해서 시간이 훨씬 적게 들 것이다. 특히 핵폐기 실시 단계로의 진입은 북한의 핵폐기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폐기과정에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라. 핵폐기 완료 이후

상기 세 단계를 통해 확보된 북한의 비핵화 상태가 장래에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확인과 점검 차원의 사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단계이다. 통상 군축조약에서 합의한 폐기절차가 완료되더라도 상당 기간 조약위반 사건이 없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감시가 실시된다. INF 조약의 경우, 폐기가 완료된 1991년 5월부터 2001년 5월 31일까지 10년 동안 위반사항이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감시·검증이 지속되었다.⁸ 이 기간 동안 주로 중거리미사일 생산이 가능한 미·러 양국의 미사일 생산시설에 대해서 집중적인 감시가 이뤄졌다.

⁸-Nenne Bodell, "Annex A.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agreements," *SIPRI Yearbook 2006* (Stockholm: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2006), p. 817.

2. 예상쟁점과 대응방향

비핵화의 대상인 북한의 핵능력은 세 개의 분야와 네 개의 요소로 구성된다. 세 개의 분야란 이미 제조했거나 제조중인 핵무기, HEU를 생산하는 농축활동, 그리고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재처리 활동이다. 네 개의 요소란 핵무기, 핵무기의 제조를 뒷받침하는 하부구조, 핵물질 및 전문 인력이다. 이를 토대로, 각 단계별로 북한의 의무사항과 예상쟁점 및 한국의 대응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단 2·13 합의를 기준으로 할 때, 불능화·신고 단계에서는 핵무기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다.

가. 불능화·신고 단계

(1) 북한의 의무사항

(가) 모든 핵시설의 폐쇄·봉인 및 관련 활동의 전면 중단

농축, 재처리에 관련된 시설의 가동과 관련 물질의 연구·생산 활동을 중단하고 전문 인력의 현장 접근도 차단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하부구조〉 ① 농축: 농축에 관련된 모든 연구, 개발, 실험 및 관련 시설과 장비의 건설·구매 중단, ② 재처리: 5MWe 원자로와 방사화학실험실의 가동 중단, 50MWe, 200MWe 원자로의 건설 중지, 핵연료봉 제조시설 폐쇄, 재처리에 관련된 시설과 장비의 건설·구매 중단.

〈물질〉 ① 농축: 우라늄 광산 개발, 엘로우 케익, UF6 및 HEU 등에 대한 연구와 생산 활동 중단, ② 재처리: 핵연료의 제조, 사용 후 핵연료의 이 전 및 플루토늄의 생산 등을 중단.

〈인력〉 영변 핵연구단지외 핵장치가 보관되어 있는 장소 및 기타 핵 관련

I
II
III
IV

시설을 폐쇄함으로써 전문 인력의 현장 접근을 차단.

(나) 핵시설 폐쇄 및 핵활동 중단 검증

영변 핵시설이 재가동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IAEA 사찰관의 봉인과 감시 활동이 필요하다.

(다) 불능화

영변 핵시설, 특히 핵물질 생산이 가능한 5개 핵시설(5MWe 원자로, 50MWe 원자로, 200MWe 원자로, 방사화학실험실, 핵연료제조공장)을 중심으로 핵시설들을 재가동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불능화시킨다.

(라) 모든 핵프로그램의 신고

농축·재처리에 관련된 시설과 장비, 관련 물질 및 전문 인력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신고해야 할 것이다.

<하부구조> ① 농축: 해외에서 수입한 모든 장비, 기술 및 그 소재와 해외 수입처, 북한이 자체적으로 생산·제조한 모든 장비, 기술 및 그 소재, 연구·개발·시험·제조 시설과 이들 시설의 작업기록, 농축시설의 설계와 건설 등, ② 재처리: 5개 핵시설을 포함해서 IAEA에 신고한 16개 시설의 현황과 2002년 12월 핵동결 해제 이후 5MWe 원자로와 방사화학실험실 및 핵연료제조공장의 운영기록 등.

<물질> ① 농축: 해외에서 수입한 모든 물질의 소재, 북한이 자체적으로 생산·제조한 모든 물질 및 그 소재, ② 재처리: 2002년 10월 당시 보관 중이던 8,000개의 폐연료봉의 재처리 진행상황과 소재, 2002년 12월 이

후 추가 생산된 플루토늄의 양, 5MWe 원자로에서 추가로 생산한 폐연료봉의 존재여부와 내역, 새로이 제조된 핵연료의 존재여부와 총량 및 소재, 북한이 1992년 5월 IAEA 사찰을 받기 이전에 이뤄졌던 소위 ‘과거 핵활동’, 2007년 9월에 밝혀진 북한과 시리아의 핵 밀거래와 같은 북한의 핵확산 행위 등.

〈인력〉 핵물질의 제조와 사용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한 과학자와 기술자, 핵 관련 시설의 경비책임을 맡은 군인과 경찰 등 인적자원.

(마) 신고된 정보의 검증

신고된 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면밀하게 조사하는 임시사찰을 실시한다. 핵물질에 대한 사찰은 단순한 육안 확인만으로 불가능하다. 사찰을 위해 특수기계장비를 제작하거나 과학적 실험을 실시하는 등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임을 감안할 때, 임시사찰을 완료하는 데 수년의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참고로 자발적으로 핵을 포기하고 IAEA 사찰을 수용한 남아공의 경우 사찰준비에서부터 완료까지 3년여의 시간이 걸렸다.

(2) 예상쟁점

(가) 모든 핵시설의 폐쇄·봉인 및 관련 활동의 전면 중단

북핵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폐쇄·봉인은 핵물질 생산에 관련된 모든 핵활동의 전면 중단으로 해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재 IAEA의 감시는 주요 핵시설의 가동 중지를 확인하는 것에 국한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IAEA 사찰을 수용하긴 했지만 핵물질 생산에 관련된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는 것을 확인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I
II
III
IV

(나) 핵시설 폐쇄 및 핵활동 중단 검증

2007년 7월 14일 입북한 IAEA 사찰단이 감시카메라와 봉인장치를 설치했지만 과거와 같이 IAEA 감시요원의 상주가 허용될지는 의문이다. 2007년 6월 26~29일 IAEA 보장조치부국장이 북한을 방문해서 합의한 내용에 상주감시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⁹ 북한은 IAEA 회원국도 아니고 NPT에서도 탈퇴했다는 소위, 특수한 지위를 이유로 2002년 10월 이전에 실시되었던 상주감시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하나의 카드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 불능화

불능화를 달성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군축조약에서는 이행과정에서 교묘하게 합의를 위반할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서 폐기의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사소한 것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예를 들어, 1990년에 합의된 유럽재래식군축조약의 경우, 전차를 폐기하는 방법의 하나로 포미(砲尾)로부터 100mm 이내의 지점에서 포신(砲身)을 돌려 절단하도록 했다.

2007년 말 현재 불능화와 신고는 일정을 넘기며 지연되고 있다. 모두 10단계 11개 조치로 이뤄지는 불능화 작업 중 폐연료봉 인출과 관련한 2개 조치는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연내에 완료되기 어렵다. 폐연료봉 인출 등 2개 조치는 방사능 오염 등의 문제 때문에 일정한 시간을 두고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 초까지의 작업 연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일부 불능화 작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북한이 과도한 불능화를 거부함으로써 문제가 생기는 부분도

⁹- *Monitoring and Verification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GOV/2007/36,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July 3, 2007.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불능화 단계에서 50MWe 원자로용으로 제조된 핵연료를 폐기하고 5MWe 원자로의 냉각탑도 완전히 해체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북한은 두 사안은 불능화 대상이 아니라며 거부하면서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서 핵 폐기 단계에서 별도의 보상을 조건으로 불능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¹⁰

신고와 관련해서도, 북한은 HEU 프로그램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물론 시리아와의 핵 커넥션 사실도 부정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이 12월 1일 직접 김정일에게 친서를 보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탄두의 수, 무기급 플루토늄의 양 및 핵확산 실태에 대한 보고를 요구했지만,¹¹ 북한은 ‘행동 대 행동 원칙’만 되풀이했을 뿐 속 시원한 대답을 내놓지 않았다. HEU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은 2002년 6월 러시아로부터 수입한 150톤의 알루미늄 튜브는 재래식 무기 제조용이라고 주장하면서 파키스탄과의 핵 협력 사실과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미국에 샘플로 제출한 알루미늄 튜브에서 우라늄 흔적이 발견됨으로써 북한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점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¹² 시리아와의 핵 커넥션 문제에 대해서는 이 문제가 불거진 지난 9월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리와 시리아와의 핵 거래설은 미친놈들이 만든 것”이라며¹³ 강력히 부인하던 입장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¹⁴

북한이 불능화와 북·미 수교를 연계하는 것도 문제이다. 김명길 북한 유엔대표부 차석대사는 7월 15일 AP 통신과의 회견에서 불능화를 위해

¹⁰. 『조선일보』, 2007년 12월 24일.

¹¹. Helene Cooper, “A new Bush tack on North Korea,” *New York Times*, December 7, 2007.

¹². Glenn Kessler, “Uranium traces found on N. Korean tubes,” *Washington Post*, December 21, 2007, p. A25.

¹³. 『연합뉴스』, 2007년 9월 25일.

¹⁴. 『조선일보』, 2007년 12월 8일.

서는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적성국교역법 적용 종료 등 미국의 상응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¹⁵ 반면에 부시 행정부의 입장은 적어도 불능화가 완료되어야만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적성국교역법 적용 해제가 가능하고, 북핵폐기가 완료되어야 수교가 가능하다는 것이다.¹⁶

(라) 모든 핵프로그램의 신고

북한이 플루토늄과 HEU에 관련된 세부 사항을 모두 공개할 것으로는 기대하기 어렵다. 2007년 8월 북경에서 열린 비핵화 실무그룹회의에서 북한이 HEU와 관련하여 ‘先 증거제시’와 같은 요구를 하지 않는 등 다소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고는 하지만,¹⁷ 북한이 1990년대 중반부터 플루토늄 프로그램을 대체하기 위해서 비밀리에 추진해 온 HEU 프로그램의 전모를 쉽사리 공개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플루토늄의 경우에도 다음 단계인 핵무기의 폐기와 연동된 사안이라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내역 공개를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외부로의 핵확산 행위에 대해서도 정확한 신고를 기대하기 어렵다.

(마) 신고된 정보의 검증

신고된 모든 핵프로그램의 내역을 검증하는 것으로서 핵시설과 핵물질에 대한 임시사찰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앞서 밝힌 대로, 핵물질에 대한

15. 『연합뉴스』, 2007년 7월 16일.

16. 전성훈, 『부시 행정부의 북핵정책 변화 분석』, 통일정세분석 2007-05 (서울: 통일연구원, 2007).

17. 6자회담 한국측 차석대표인 임성남 북핵외교기획단장은 2007년 8월 16일 중국 선양에서 열린 비핵화 실무회의 첫날 일정을 마친 뒤 “북측이 신고단계에서 우리농축 의혹을 해소할 용의가 있다”고 전했다. 다른 회담 당국자는 “북측은 단순히 해명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신고의 한 부분으로서 신고 단계에 해명하겠다”고 강조한 뒤 “북측은 또 ‘증거를 제시하라’는 등의 조건을 전혀 내세우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07년 8월 17일.

사찰은 단순한 육안 확인만으로 불가능하며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작업이다. 임시사찰을 완료하는 데만 수년의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3) 한국의 대응방향

폐쇄·봉인은 핵물질 생산에 관련된 모든 핵활동의 중단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관련 핵활동을 모두 중단했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지도록 북한에 요구해야 한다:

- 전문 인력의 현장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서 북한당국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조치의 내용에 대한 보고.
- 6자회담 참가국들이 자체적인 조치의 내용이 부실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IAEA가 추가 조치를 요구.
- 영변 원자력단지 내에 IAEA 사찰관의 상주 허용.

한편, 불능화 과정에서 북한은 재가동의 여지를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국은 불능화가 핵시설의 재가동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즉 불가역적으로 핵시설을 “변형”(Deformation)하는 것이라는 점을 관철시켜야 한다.

북한이 핵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신고에 응할 지 장담할 수 없으나 신고내용에는 다음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영변에 대한 IAEA 사찰이 최초로 실시된 1992년 5월 이전에 진행된 재처리 활동과 추출된 플루토늄의 양.
- 북한이 영변지역에서 IAEA 사찰관을 추방한 2002년 12월 말부터

I
II
III
IV

5MWe 원자로 가동중단 시점인 2007년 7월 15일 이전까지 폐쇄 대상 핵시설(5MWe 원자로, 방사화학실험실, 핵연료제조시설, 50MWe 원자로, 200MWe 원자로)의 운영 및 현황에 관한 정보.

- 2002년 12월 이후 생산된 플루토늄의 양.
-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에 사용된 플루토늄의 양과 실태.
- HEU에 관련된 과거와 현재의 모든 활동 내역.
- 파키스탄 칸 박사와의 핵 밀거래 및 협력 내역.

HEU의 경우 플루토늄과 같이 핵탄두로 제작되었는지의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비밀 핵개발이 플루토늄에 비해 용이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6자회담 참가국들 뿐만 아니라 파키스탄 정부와의 협조를 통해서 그 실태를 철저히 조사·확인해야 할 것이다. 이 시점은 북한 정권이 과연 핵무기를 포기할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분수령이므로 적당한 타협은 있을 수 없다. 오히려 HEU에 관련된 북한의 불법 활동을 공개하여 압박함으로써 북한의 핵무기 보유 의지를 꺾고 핵폐기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신고내용에 대한 검증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검증기구를 미리 구성하고 교육과 예행연습을 실시하는 등 사전준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이 IAEA 사찰관을 추방하고 NPT에서 탈퇴한 이후 북핵문제의 해결과정을 지켜보고 확인할 검증의 주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북한과 IAEA 간의 갈등관계를 감안할 때, IAEA가 단독으로 검증의 주체가 될 가능성은 많지 않다. 오히려 유엔안보리 결의안과 같은 국제적인 합의를 토대로 별도의 검증기구를 창설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새로이 구성되는 기구에는 IAEA, 남한 그리고 미국이 반드시

구성원으로 참여해야 한다. IAEA의 참여는 북한 핵문제가 범세계적 차원의 문제로서 국제사회 전체의 이익과 관심을 배려한다는 정치적, 외교적인 당위성과 상징성을 갖는다. 북한 문제가 우리의 안보와 생존에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한국의 참여 역시 필수불가결하다. 미국의 참가는 북·미 직접대화를 요구하는 북한의 정서와 입장을 반영해서 대북한 인센티브의 하나로 간주될 수 있으며, 핵보유국인 미국의 핵무기 해체 경험을 활용할 필요도 있다.

한편, 검증과정에서 필수적인 것은 북한의 내부고발자를 확보·활용하는 것이다. 핵개발 실패와 현장 상황에 익숙한 내부고발자야말로 정보가 극히 제한된 북한과 같은 폐쇄체제에 대한 사찰작업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특히 핵무기의 개발 현황과 현지 시설의 운용에 정통한 정보제공자는 최첨단의 과학기술 장비 못지않은 귀중한 정보자산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지금부터 내부고발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유인책을 포함한 다양한 대북조치를 준비해두어야 한다. 아울러 내부고발자의 신분이 불가피하게 공개되는 경우에 대비해서 이들의 신변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정치적, 법적 대응책도 강구되어야 한다.

나. 핵폐기 협상 단계

(1) 북한의 의무사항

북한은 조속한 시일 내에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핵폐기 협상에 진지하고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협상의 목표가 북한이 보유한 핵프로그램의 완전한 제거,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핵무기 폐기와 핵시설 해체로 이미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 만큼, 핵폐기 협상에 불필요한

I

II

III

IV

시간과 노력이 낭비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북한은 최대한 신속하게 핵 폐기 협상을 마무리 짓는다는 목표 하에 정치논리를 배제하고 실무적으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

(2) 예상쟁점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이 핵폐기 협상에 신속하게 실무적인 자세로 임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2·13 합의가 핵폐기를 명시한 9·19 공동성명에 토대를 둔 것이라고는 하지만 2·13 합의 자체는 불능화·신고 단계에서 임무가 완료되는 문건에 불과하다. 핵폐기를 위해서는 새로운 협상이 필요하며, 이 새로운 협상에서 북한은 새로운 전략과 목표를 들고 나올 것이다. 구체적으로, 북한은 불능화·신고 단계가 마무리되면 6자회담을 핵군축회담의 장으로 전환시키고, 북한의 오래된 대미·대남 핵전략인 소위, ‘조선반도의 비핵화’ 전략을 추구할 것이다.

문제는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와 남한이 얘기하는 ‘비핵화’는 본질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개념이라는 사실이다. 남과 북이 서로 다른 의미의 ‘비핵화’를 말하면서 동상이몽 중에 있는 것이다. 남한은 핵보유를 포기하고 주한미군의 전술핵까지 철수한 상태이므로 북한의 핵무기만 폐기하면 비핵화가 달성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북한이 주장하는 비핵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한미군 철수와 북한 주도의 한반도 통일이다.

지금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는 1990년대 초 남북기본합의서 협상때 제기했던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이다. 당시 북한은 핵무기 탑재 가능 항공기·함선의 한반도 통과·착륙·방문 금지, 핵우산 보장조약 체결 금지, 핵무기 동원 군사훈련 금지 등을 요구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한·미 군사동맹 자체가 불가능해지게 된다. 미군의 한반도 출입은 물론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군사훈련까지 금지되기 때문이다. 미군의 전술핵이 철수된

1991년 이후에도 북한은 한·미 군사훈련을 핵전쟁 연습훈련이라면서 줄곧 비난해오고 있다.

북한이 남한의 ‘비핵화’를 수용하여 비핵화 공동선언에 합의한 것은 당시 동구 공산주의의 붕괴로 어려움에 처한 김일성이 정권의 활로를 남북대화에서 찾으려 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핵화 공동선언 체결 직후부터 북한은 비핵지대화의 내용을 다시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후 북한의 주장은 ‘비핵화’라는 모자를 쓰긴 했지만 그 내용은 ‘비핵지대화’였다. 양의 탈을 쓴 늑대의 모습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북한 정권의 주한미군 철수 의지는 집요하다. 핵이 없었던 1980년대까지는 재래식 전력 감축을 매개로 주한 미군과 핵 철수를 주장했었다. 그러나 이제 핵무기까지 보유하게 되었으므로 당연히 미국과 핵군축 협상을 하자고 나서는 것이다. 비핵화가 김일성의 유훈이라는 북한의 주장은 핵을 매개로 외세를 배격하고 남북통일을 주도하겠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북한 정권에게 있어서 비핵화는 수단이지 목표가 아니다.

핵보유를 선언했고 핵실험까지 실시한 북한은 명실상부한 핵무기 보유국이다. 북한의 핵실험은 핵의 무기화 과정이 상당부분 완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은 2006년 10월 9일 실시한 핵실험을 통해서 핵무기를 보유했다는 그들의 주장이 말장난이 아니라 분명한 실체임을 입증하고자 했다. 기술적 측면에서 볼 때, 이번 핵실험을 완벽한 성공으로 보기 어려운 점들이 있지만, 핵 역지력의 증강을 공언해 온 북한이 핵개발의 마지막 금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실험까지 실시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핵실험을 감행하기 이전의 북한과 이후의 북한은 다를 수밖에 없다.

앞으로 북한은 그 실체를 과시한 핵무기를 바탕으로 보다 공세적인

핵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핵능력을 계속 강화해나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의 대남, 대미용 비핵지대화 전략을 강하게 추진할 것이다. 핵폐기 협상을 미국과의 양자 핵군축 실현의 장으로 규정하고, 한·미 동맹을 무력화시키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다양한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서, 북한이 핵보유를 공식 선언한 2005년 2월 10일 이후 한 달 보름여 만인 3월 31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발표한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담화의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담화는 핵보유국임을 최초로 공식 선언한 김정일 정권이 앞으로 핵무기를 자산으로 구사하고자 하는 정책의 기본방향을 담고 있는 중요한 문건이다. 담화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¹⁸

1. “이제 와서 미국은 저들의 핵위협은 뒷전에 밀어놓고 우리만 핵무기를 내놓으면 조선반도비핵화가 실현되는 것처럼 비핵화의 본질을 오도해 나서고 있다.”
2.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려면 남조선에서 미국의 모든 핵무기들을 철거시키고 남조선자체가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을 원천적으로 없애버려야 한다. … 이와 함께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우리를 반대하는 일체 핵전쟁연습을 중지하고 핵위협 공간을 청산해야 하며 우리와 미국을 포함한 주변나라들 사이에 신뢰관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3. “우리가 당당한 핵무기 보유국이 된 지금에 와서 6자회담은 마땅히 참가국들이 평등한 자세에서 문제를 푸는 군축회담으로 되어야 한다.”

¹⁸ 『조선중앙방송』, 2005년 3월 31일.

(3) 한국의 대응방향

한국이 북한과의 핵군축 협상에 준비된 자세로 임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군축 전략이 내포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전략적 요소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1. 김정일 정권이 유지되는 한 북한이 핵을 쉽게 포기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 이유는 핵무기가 북한 국력의 상징이자 선군정치의 귀중한 결실이기 때문이다. 핵은 김정일의 통치이념인 선군정치로 탄생했고 선군정치를 지속시켜주는 보루이다.
2. 북한이 핵을 미끼로 사실상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 동맹의 와해 그리고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3. 북한은 남한의 핵무장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한·미관계의 분열과 남한의 협상입지 약화를 시도하고 있다.
4. 북한이 일본의 군사대국화, 미·일의 미사일방어망 구축, 한국과 대만의 핵개발 가능성 등 동북아의 다양한 안보현안을 6자회담의 의제로 삼으려 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다. 즉 북한 핵문제를 동북아가 직면한 여러 가지 안보현안 가운데 하나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핵위기의 심각성을 희석시키고, 북핵과 다른 현안들을 연계하여 핵보유의 정당성을 부각시킴으로써, 핵보유 상태를 지속하려는 북한 정권의 의도가 엿보인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6자회담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요구를 제시함으로써 6자회담의 진행을 어렵게 만들고, 회담 의제를 분산해서 북핵 폐기라는 목표의 초점을 흐리게 하면서, 6자회담이 지지부진한 원인이 북한에 있다는 비판을 모면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5. 북한의 '6자회담의 동북아 군축회담화' 주장은 중국 측의 지지를 겨냥

한 고도의 계산된 전략이라고 판단된다. 6자회담의 군축회담화가 강화되고 있는 미·일 동맹을 견제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1세기 동북아 안보질서 재편에 관한 중국의 관심사항을 적절히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북한 정권은 이를 통해서 중국으로부터 핵보유를 용인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중국에 대해서 북핵 폐기를 위해 보다 강력한 노력을 경주해주도록 요구해야 한다. 사실 중국이 국제사회의 환영받는 강대국으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지위에 걸맞은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데, 북핵 폐기는 그 핵심 요건이 될 것이다. WMD와 미사일의 확산저지가 21세기 국제안보의 최대 목표로 부상한 현실에서, 중국이 인접국, 특히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하거나 핵 폐기에 성의를 다하지 않는다면, 이는 권한의 포기이자 의무 불이행으로 비난받아 마땅할 것이다.

6자회담의 지난 과정을 돌이켜 볼 때, 중국이 6자회담의 중재국으로서 건설적인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북핵 폐기를 반드시 실현해야 할 심각한 과제로 인식하고 발 벗고 나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중국은 단순히 회담개최에 의미를 부여하고 더 이상의 상황악화만 방지하면서 현상이 유지되는 상태를 즐겼던 것으로 보인다. 즉 지금까지 중국의 목표는 북핵 폐기가 아니라 현상관리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 핵실험 이후 중국이 대북제재에 적극 나선 것은 북한의 핵개발을 용인할 수 없어서라기보다는 중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북경 지도부가 허용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선 북한의 행동이 껄뻘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북한이 핵카드를 흔들면서 미·일 동맹을 견제하고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규제하는데 기여하겠다는데, 중국이 극구 반대할 이유는 없다.

북한의 핵무기가 동북아에서 미국의 패권주의를 통제하는데 한 몫 할 수 있다면 구태여 폐기시킬 필요가 없다는 게 아마도 미·중 경쟁을 염두에 두고 있는 중국 지도부의 생각일 것이다. 동북아 안보문제의 근본 원인은 미국의 패권주의라는데 북·중 양국은 공감대를 갖고 있을 것이다. 핵실험까지 하면서 핵보유국임을 외쳐대는 김정일 정권이 노리는 목표는 바로 중국의 21세기 동북아 대전략의 선봉에 서서 미 제국주의와 맞서 싸우겠다는 명분 아래 정권의 생존을 보장하고 더 나아가 북한 주도의 한반도 통일이라는 꿈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 핵폐기 실시 단계

(1) 북한의 의무사항

(가) 핵무기 관련 활동의 전면 중단

핵무기의 운용 중단, 핵무기 제조 관련 시설의 가동 중단, 핵무기 제조에 관련된 물질의 생산 및 사용 중단, 전문 인력의 시설접근 차단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핵무기〉 핵무기의 배치, 운반, 사용전략 논의 등 핵무기의 정치적, 군사적 사용에 관련된 일체의 활동 중단.

〈하부구조〉 핵무기의 제조와 연구·개발, 기폭실험, 핵실험 및 관련 시설과 장비의 건설·구매 등 핵무기 제조에 관련된 일체의 활동 중단.

〈물질〉 핵무기의 제조와 연구·개발, 기폭실험, 핵실험 등에 사용되는 물질의 제조·구매 등의 활동 중단.

〈인력〉 핵무기 제조, 군사작전 및 전략수립에 관련된 인력의 운용 중단.

I

II

III

IV

(나) 핵무기 관련 모든 정보의 공개

핵무기의 제원과 배치·운용 현황, 핵무기 제조 역사 및 시설 현황, 핵무기 제조에 관련된 물질 및 전문 인력의 보유 현황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보가 공개될 필요가 있다. 일부 정보는 폐기해야 할 대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핵폐기 협상단계에서 공개될 것이다.

〈핵무기〉 핵무기의 제조시점과 설계 및 파괴력, 핵무기의 배치 위치와 관리 및 명령체계, 작전계획 및 사용지침.

〈하부구조〉 핵무기의 제조와 연구·개발, 기폭실험, 핵실험 및 관련 시설과 장비의 목록과 소재.

〈물질〉 핵무기의 제조와 연구·개발, 기폭실험, 핵실험 등에 관련된 물질의 목록과 소재.

〈인력〉 핵무기의 제조와 배치, 운반, 보관, 경비, 군사작전 및 전략수립에 관련된 군인과 민간인 등 인적자원.

(다) 핵무기 폐기와 핵시설 해체

이 단계는 핵무기를 폐기하고 관련 시설을 해체하기 위한 절차를 실행하는 단계를 말한다. 핵무기의 폐기는 이 분야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미국이나 러시아가 그 역할을 떠맡아야 할 것이며, 핵시설 해체에도 첨단 원자력기술을 보유한 나라들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핵능력 해체 단계에서는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플루토늄과 농축우라늄을 5개 핵보유국가운데 희망하는 나라로 반출시키는 작업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라) 핵폐기 단계의 검증

핵시설을 해체하고 핵무기를 폐기하는 과정도 사찰의 대상이므로 준비에서부터 완료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해 공인된 검증기구에 의한 집중적인 사찰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2) 예상쟁점

(가) 핵무기 관련 활동의 전면 중단

물리적인 활동은 중단할 수 있으나 이미 확보된 지식과 정보는 지울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다고 해서 핵무기 개발에 관여한 과학기술자들을 구금하거나 전혀 다른 일에 종사하도록 할 수도 없다. 이들에 대한 처우가 나쁠 경우 기술유출이나 해외도주를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나) 핵무기 관련 모든 정보의 공개

보유하고 있는 핵탄두에 관한 물리적인 정보는 기술적으로 검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숨김없이 모두 제공될 것이다. 그러나 핵무기 개발에 중국과 러시아 등 핵보유국과 파키스탄의 칸 박사 등이 언제 어떻게 어느 정도의 도움을 주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완전히 해소되기는 힘들 것이다. 이 부분은 핵보유국들의 과거 핵확산 행위를 건드리는 예민한 사안이므로 우리의 기대만큼 의혹을 해소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관련된 정보를 어느 정도 외부로 확산시켰는가를 확인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다) 핵무기 폐기와 핵시설 해체 및 검증

폐기·해체 및 검증을 누가 수행할 것인가 그리고 비용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주체와 비용의 문제가 발생한다. 미국 등 핵보유국은 핵 무기 폐기의 경우 비핵국가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이유로 내세우면서 한국과 일본의 참여를 거부할 것이다. 그러나 일본과 달리, 한국의 경우에는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대해 파악하고 확인할 법적 권한과 의무가 있다. 즉 국가 주권에 관한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핵폐기를 미국에게 전적으로 일임하는 것은 법적, 도덕적, 정치적으로 허용할 수는 없는 일이다. 반면에 핵시설 해체의 경우, 미국 등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반면에 핵확산 위협이 크지 않기 때문에 한국이 책임져주기를 원할 것이다.

(3) 한국의 대응방향

핵무기에 관계된 활동의 전면 중단과 관련해서, 북한의 전문 인력을 단속하고 재교육시켜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분야에 종사하면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이 구소련의 네 개 공화국의 과학자와 기술자를 관리하기 위해 실시한 “협력위협 감소”(Cooperative Threat Reduction) 프로그램을 원용할 필요가 있다.¹⁹ 핵폐기 과정에 한국의 참여와 관련, 한국이 주도적으로 ‘북핵 개발 실태 백서와 지도’(White Paper and Map on the DPRK’s Nuclear Weapons Development)를 완성해서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완성하는 것이 한국의 비핵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신을 해소하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등 다양한 논리를 구사해서 6자회담 참가국들을 설득·회유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핵무기 폐기와 검증에 관련된 문제는 북한의 WMD 제거를 위한 한·미 작전계획 수립과도 연관된 사

¹⁹ 전성훈, 『북핵 ‘2·13 합의’와 평화적인 핵폐기 사례 분석』, KINU 정책연구시리즈 07-01 (서울: 통일연구원, 2007), pp. 17~36.



안이므로 지금부터 한·미간에 공조와 협력을 통해 상호 공감대를 넓혀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 북핵폐기 과정에서 등장할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가 바로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다. 북핵폐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검증기구의 구성과 운용 및 검증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검증비용이다. 둘째는 핵시설을 해체하고 환경오염을 처리하는 핵시설 해체비용이다. 셋째는 핵폐기의 대가로 북한에 지불하는 에너지를 비롯한 경제적인 지원과 협력에 소요되는 보상비용이다. 이 가운데에서 가장 많은 비용이 소요될 부분은 물론 보상비용이다. 하지만 보상비용은 보다 큰 틀의 정치·외교적인 문제들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고, 경험에 참여하는 보상국가가 경제적인 인센티브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다. 검증비용 역시 검증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역할에 맞게 균등하게 부담하자는 합의가 가능할 것이다. 반면에 핵시설 해체 비용의 경우, 오염된 환경을 정화하는 문제는 한반도 내부의 문제라는 이유를 들면서 한국을 제외한 6자 회담의 다른 참가국들이 떠맡으려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는 북핵 폐기와 검증에 참여할 수 있는 주요 국가의 능력과 역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²⁰ 이 연구에서는 참여의 가능성과 적절성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구분했다: ① 기술적 능력, ② 재정적 능력, ③ 정치적 의지, ④ 핵폐기 경험. 이 연구의 문제점은 미국의 관점에서 미국의 국가이익을 고려한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핵폐기 경험과 기술이 많은 미국은 북핵 폐기에 대한 정치적

²⁰- Joel Wit, et al., *The Six Party Talks and Beyond: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and North Korea* (Washington, D.C.: Th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2005).

의지와 재정적 여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에, 정치적 의지와 재정적 능력이 많은 한국은 상대적으로 핵폐기 기술과 경험이 떨어진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 연구의 결과대로라면, 재정적 부담은 한국이 지더라도 직접 핵폐기를 실행하는 주체는 미국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본 연구에서는 북핵 폐기와 핵시설 해체 및 검증 과정에서 각국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과 저야 할 부담에 대해서 관련국들이 취해야 할 바람직한 입장을 새로운 관점에서 분석하고, CSIS 연구 내용을 수정·보완했다. 아울러 한국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문화적 친밀성과 법적 정당성이란 두 가지 기준을 추가했다. 이를 토대로 각국의 역할을 재조정된 결과는 아래의 <표 III-1>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III-1> 북핵 폐기·검증 과정에서 각국의 바람직한 역할

기준 국가	기술적 능력	재정적 능력	정치적 의지	핵폐기 경험	문화적 친밀성	법적 정당성
미국	매우 높음	중간	높음	매우 높음	낮음	중간
한국	중간	중간	높음	낮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중국	높음	중간	높음	낮음	중간	중간
일본	높음	중간	높음	낮음	중간	중간
러시아	높음	중간	높음	높음	낮음	중간
유럽연합	높음	중간	높음	낮음	낮음	중간

우선 본 연구에서는 각국의 재정적 기여도를 동일하게 중간 수준으로 잡았다. 2·13 합의의 부속문서인 “대북 지원부담의 분담에 관한 합의의 사록”에 의거해서 북한에 대한 에너지 지원 부담을 ‘평등과 형평의 원칙’에 기초하여 분담할 것에 합의했고, 이 합의에 따라서 대북 중유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²¹ 반면에 북핵 폐기에 대한 정치적 인 의지는 모두 높다고 보았다. 북한 핵문제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의 안보문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9·11 테러 이후 핵무기를 포함한 WMD의 확산이 국제안보의 최대 현안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NPT를 탈퇴하고 핵보유국이 된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국가들의 문제해결 의지에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본 논문이 추가한 문화적 친밀성과 법적 정당성 두 가지 요건에서는 한국이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6자회담 참가국 가운데 북한과 언어와 문화적 측면에서 동질성이 가장 높은 나라가 한국이라는 사실은 한국이 실무적인 차원에서 많은 기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적 정당성이란, 한국이 대한민국 헌법상 자국 영토로 규정된 북한 땅에서 벌어지는 핵폐기와 핵시설 해체 및 이에 대한 검증 상황을 상세하게 인지하고 관리·감독해야 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말한다.

라. 핵폐기 완료 이후

(1) 북한의 의무사항

북한은 핵폐기를 통해 달성된 비핵화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상기 세 단계를 통해 확보된 비핵화 상태가 장래에도 그대로 유지된

²¹ 2·13 합의에 의거해서 한국, 중국, 미국 및 러시아는 불능화와 신고의 대가로 북한에 중유 45만 톤과 중유 50만 톤 상당의 에너지 관련 설비와 자재를 제공하기로 했다. 2007년 12월 말 현재, 한국, 중국, 러시아, 미국이 각각 5만 톤씩(비용은 약 230억 원)의 중유를 제공했거나 제공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한국(7월 말), 중국(9월 말), 미국(10월 말)이 각각 5만 톤의 중유를 제공했고, 러시아가 11월분 5만 톤을 보낼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은 12월 16일 100억원 상당의 철강재 5,010톤을 제공했다.

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확인과 점검 차원의 집중적인 사찰이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북한은 두 가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첫째, 비핵국가로서 NPT에 다시 가입해야 할 것이다. 북한 땅에 핵무기나 핵무기 제조에 사용된 시설과 장비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의 NPT 복귀는 현실적으로도 어렵겠지만 바람직하지도 않다. NPT의 정상적인 회원국이 수용하는 IAEA의 정기사찰은 집중적인 사찰이 일정기간 수행된 후에나 가능할 것이다. NPT를 위반한 핵개발 국가로서의 오명을 씻고 정상국가로 대우받기 위해서는 핵무기와 관련 시설 및 장비를 폐기하는 것은 물론, 더 이상 핵개발에 손을 대지 않는다는 국제사회의 신뢰가 뿌리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2) 예상쟁점

핵폐기 완료 이후에 제기될 수 있는 예상쟁점은 크게 다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 경수로 건설 문제이다. 북한은 핵폐기의 대가로 경수로 건설을 반드시 쟁취하려 할 것이다. 둘째, 핵무기 제조에 관여했던 과학자와 기술자 등 전문 인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3) 한국의 대응방향

경수로 제공 문제는 북한이 핵폐기를 완료한다는 전제 하에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9·19 공동성명에 북한의 경수로 보유 권한이 명시되어 있고,²² 이후 6자회담 과정에서도 이 부분이 재차 강조

²² 9·19 공동선언 제1항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여타 당사국들은 이에 대한 존중을 표명하였고, 적절한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관한 경수로 제공문제에 대해 논의하는데 동의하였다.”

되어왔다. 따라서 ‘先 핵폐기, 後 경수로 제공’ 원칙에 대해서 6자회담 참가국들 사이에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하기로 한다면 제네바 기본합의에 의거해서 KEDO가 함경북도 신포에서 시행중이던 경수로 건설 사업을 재개하는 것이 비용과 효과 등 모든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신포의 경수로 건설현장을 원상태로 관리하는 등 경수로 사업의 전체 공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6자회담 참가국들 간에 이에 대한 사전합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핵무기 제조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했던 인력에 대해서는 평화적 목적의 산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이들의 지식이 불법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한반도 협력위협감소”(Korean Peninsula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KCTR)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반도 협력위협감소 프로그램의 기본 취지는 북한의 비핵화가 남북한의 상생과 화해협력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남한이 핵무기 개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북한의 과학자와 기술자들에게 평화적인 분야에서 그들의 재능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구소련에 대해 실시했던 CTR 프로그램을 원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²³

구체적으로, 북한의 과학기술자들에게 남한에서의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CTR 프로그램의 경우 구소련의 WMD 개발에 종사했던 과학기술자들에게 평화적인 영역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²³. 미국이 추진중인 CTR 프로그램을 비롯한 평화적인 핵폐기 사례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기 바란다. 전성훈, 『북핵 '2·13 합의'와 평화적인 핵폐기 사례 분석』, KINU 정책연구시리즈 07-01 (서울: 통일연구원, 2007); Cheon Seongwhun, *Cooperativ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Seoul: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006).



하기 위해 연구계약과 기술 상업화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하지만 이러한 방안들은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예를 들어, 연구계획은 3년 단위로 시한이 정해지고 재계약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보장해주지 못했고, 상업화 프로젝트도 자본주의 체제에 익숙하지 않은 러시아에서 기술을 상업화하는데 많은 장애가 있었다.

구소련의 경험을 고려할 때, 북한 기술자들을 북한 내에서 소화하는 대신에 한국의 관련 연구기관이나 기업에서 고용해서 이들에게 안정적인 재취업의 기회를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고급인력을 파견해서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고, 해당 기술자들은 생활환경이 생소한 외국보다 언어와 문화가 통하는 한국에서 생활하는 것이 편리할 것이다. 한국은 북한의 고급 인력들을 고용하고 재교육시켜서 이들이 평화적인 분야에서 자기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과학기술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남북한 간의 화해협력과 이질감 해소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 비핵국가인 우크라이나에서 WMD 개발에 관여했던 과학자들을 평화적인 목적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한 “우크라이나 과학기술센터”(Science and Technology Center of Ukraine)의 운영 사례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북핵 폐기를 위한 대북전략

북한 핵보유 사태의 일차적인 원인은 핵개발에 집착한 북한 정권이지만, 남한의 햇볕정책과 평화변영정책도 북한의 핵개발을 묵인하고 방조했다는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²⁴ 북한 정권은 대를 이어가며 남한과 국제사회를 기만하면서 집요하게 핵개발을 추진해서 마침내 성공했다. 특히 김정일은 핵무기를 그의 통치이념인 선군정치 최대 성과로 간주하고 있다. 이는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쉽게 포기하지 못할 것이며, 제17대 대통령의 재임기간인 향후 5년 동안에도 북핵 문제가 통일·외교·안보의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2008년 새로운 정부의 출범에 즈음하여, 햇볕정책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한국정부가 추진해 온 대북전략과 국민들이 보여준 대북인식을 재검토하고 문제점을 진단한 후 이를 토대로 한 새로운 대북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새로운 대북전략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1세기 국제안보질서를 고려하고 통일·외교·안보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국가전략에 토대를 둔다.
-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한다.
- 신속한 북핵 폐기를 통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완성한다.
-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을 분리해서 이원화된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대북 지원과 협력의 초점을 북한 주민의 고통을 덜어주고 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는 데에 맞춘다.
- 북한 정권이 핵을 포함한 WMD를 포기하고 대남 군사위협을 제거하는 경우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대폭적인 경제지원을 실시한다.

²⁴ 전성훈, “북핵문제와 한국의 대응,” 『국제평화』, 제4권 1호 (2007.6), pp. 73~110.

- 대북 교류협력은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해서 북한의 진정한 변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공정한 경쟁과 시장의 원리를 해치는 뇌물이나 뒷돈 등을 북한 당국에 제공해서 남북관계가 부패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아울러 새로운 대북전략은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면서 국제사회의 인식과 규범을 준수한다는 두 가지 기조 하에 마련될 필요가 있다.

1. 당근과 채찍의 병행

북핵문제는 핵비확산 규범에 저촉되는 국제적인 사안임과 동시에 한국의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안보위협이다. 따라서 북핵문제의 국제화는 피할 수 없는 일이나, 이 문제를 우리의 과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자세를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2002년 10월 제2차 북핵위기가 촉발된 이후 우리 정부는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해결”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북한 당국에 대해 핵개발을 중단하고 국제규범을 준수하도록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하지만 북한은 우리의 얘기를 “소귀에 경 읽기” 정도로 치부하면서 플루토늄을 대량 생산하고 핵무기를 제조해서 핵실험까지 했다.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2008년에 출범하는 신정부는 기존 대북전략의 전제설정과 추진체계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가를 정밀하게 점검하고 수정해야 한다.

북핵위기로 인한 안보위험을 고려할 때, 새로운 대북전략 기조는 압박과 유화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는 양면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다. 국가간의 협상에서 당근과 채찍은 상반되거나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라 모두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며,²⁵ 협상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또한 효율적으로 성취하기 위해서 상황에 따라 적절히 구사할 수 있는 상호보완적인 협상의 자산이다. 특히 군사협상과 같이 안보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협의할 때 강력한 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은 일반화된 상식이다. 요약하면, 모든 협상, 특히 안보위협을 다루는 협상에서는 힘의 우위에 바탕을 둔 협상을 해야 하며, 강력한 경제력과 군사력은 모두 상대방의 행위를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귀중한 자산이다. 체코의 하벨(Vaclav Havel) 전 대통령도 “결단력, 인내 그리고 힘의 우위에 바탕을 둔 협상이 김정일 및 그와 같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것들”이라고 주장했다.²⁶ 새로운 대북전략 기초의 효용성은 제네바 기본합의 협상에 참여했던 미국 측 전문가들에 의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²⁷ 예를 들어, 갈루치 수석대표를 포함한 미국의 전문가들은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는 압박전략을 구사하는 것이야말로 북한을 다루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는 점을 제네바 협상에서 얻은 중요한 교훈의 하나로 제시했다. 이들은 당근만 제시할 경우 북한이 도전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계속 더 많은 요구를 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채찍을 휘두를 경우 한반도의 긴장고조와 북한의 도발행위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북핵문제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의 핵개발

25.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방장관을 역임한 페리(William Perry)도 협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받을 수 있는 보상을 분명히 하는 긍정적인 차원의 방안과 더불어 북한을 압박하고 협상이 실패할 경우에 대비하는 강압적인 차원의 조치가 모두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William Perry, “It’s either nukes or negotiation,” *Washington Post*, July 23, 2004, p. A23.

26. Vaclav Havel, “Time to act on N. Korea,” *Washington Post*, June 18, 2004, p. A29.

27. Joel Wit, Daniel Poneman and Robert Gallucci, “Seven lessons for dealing with today’s North Korea nuclear crisis,” *Arms Control Today*, April 2004, pp. 19~22.

자체가 이미 증대한 군사적 도발행위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상대의 군사적 위협행위에 대해 적절한 군사적 대응조치를 취하는 것은 자위권을 발동하는 것에 불과한 정상적인 국가방어 행위이다. 한 국가의 안보전략은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져야 한다.²⁸ 북한을 자극하고 긴장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압박전략을 구사하지 않는 것은 국가전략을 반쪽짜리로 만드는 불합리한 정책결정태도이다. 대북 압박이 군사적 충돌을 야기하고 핵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은 우리 사회에 평화지상주의 내지는 허위 안보감이 확산되어 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평화는 국가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과 의지를 갖고서 관련 부처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때 제대로 유지될 수 있다. 북핵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대북 압박조치는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는 국가의 권한이자 의무사항이다.

2. 국제사회의 상식과 규범 준수

핵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란 가운데 특히 주목되는 것은 우리 사회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소위 ‘민족공조론’이다.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과 북이 공조해야 한다는 민족공조론은 북한 당국자들도 기회 있을 때마다 주장한 내용이다. 예를 들어, 2003년 1월 서울에서 열린 제9차 남북장관급회담 당시 북측은 회담관례를 깨고 기초발언문을

²⁸ 예를 들어, 부시 행정부가 한반도의 역지와 안정을 향상시킬 수 있는 외교·군사적인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북한이 핵능력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할 것을 권고하는 의견도 제시된 바 있다. George Perkovich *et al*, *Universal Compliance: A Strategy for Nuclear Security* (Washington, D.C.: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June 2004), p. 85.

공개하면서까지 민족공조를 강조했다. 이와 함께, 체제위기와 미국의 공격위협에 몰려있는 북한이 어쩔 수 없이 핵개발을 하는 것이라는 ‘북한동정론’도 존재한다.

북핵위기 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자세를 갖는 데 있어서 북핵능력을 확대·과장해서 국민 불안을 조성하는 행위나 북핵위협을 애써 무시하고 간과해서 안보 불감증을 유발하는 행위 둘 다 바람직하지 않다. 북핵위기를 둘러싼 국내의 논란을 불식시키고 이 사안이 갖는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객관적인 지표는 북핵위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과 대처방법이 될 것이다.

전 세계 190여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는 NPT 체제의 중요성 그리고 9·11 테러 이후 WMD 및 관련 물질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개별국가, 유엔, 기타 다국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국제적인 노력 등을 감안할 때, 국제사회가 현재의 북핵위기를 10년 전에 비해 훨씬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 예로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의 경우 북핵 위기는 오늘날 국제사회가 당면한 첫 번째 안보위협이라는 점을 누차 강조해왔다.²⁹

북한정권은 핵보유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대를 이어가며” 핵개발을 집요하게 추진하면서 국제사회를 철저히 기만해왔다. 핵보유 과정에서 북한이 보여준 “집요함”과 “기만”은 북한정권을 국제사회가 신뢰할 수 없는 불량국가로 확실하게 낙인찍는 결과를 가져왔고, 한반도의 통일 과정을 국제사회의 상식과 규범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남한이 주도할 수

²⁹- 예를 들어,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은 2004년 5월 미국 외교협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북한의 핵개발을 잠재적인 핵확산 행위자들에게 가장 나쁜 신호를 보내는 선례이자 국제안보 차원에서 제일가는 우려사항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Mohamed ElBaradei, *The Challenges Facing Nonproliferation* (New York: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May 14, 2004).

밖에 없다는 국제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일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사실은 앞으로 한반도에 관련된 주요 정책사안에서 남한의 입장이 북한의 그것을 압도하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핵문제와 같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남한 정부와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주목하게 될 것이고, 그 만큼 앞으로 한국의 제반 대내외 정책은 통일 이후까지를 고려하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일본의 안보전문가들은 남한이 북한 핵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북한의 핵개발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는 국제사회가 이미 실패한 북한 정권보다는 남한 정부와 국민들의 입장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북한정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을 고려할 때, 우리가 민족공조를 주장하기보다는 국제사회의 상식과 규범에 부합해서 북한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핵개발 포기를 단호하게 요구하는 것이 민족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문제의 본말을 전도하는 민족공조론이나 감상적인 북한동정론은 국제사회로부터 남과 북이 한 통속이 되어서 핵을 가지려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남한마저도 그나마 축적해놓은 신뢰를 잃어버리고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앞으로 북핵위기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대북정책을 수립하는 일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남북대화과 교류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대를 이어 충성한다”는 구호에 걸맞게 2대에 걸쳐 핵개발에 성공한 북한정권의 의도가 갖는 안보적인 함의를 깊이 통찰하면서, 북한 정권이 국제사회의 상식과 규범을 어기는 경우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결의를 과시하고, 이를 정책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문헌>

- 전성훈. “북핵문제와 한국의 대응.” 『국제평화』. 제4권 1호. 2007년 6월.
- _____. 『부시 행정부의 북핵정책 변화 분석』. 통일정세분석 2007-05. 서울: 통일연구원, 2007.
- _____. 『북핵 ‘2·13 합의’와 평화적인 핵폐기 사례 분석』. KINU 정책연구시리즈 07-01. 서울: 통일연구원, 2007.
- Blacker, Coit and Gloria Duffy. *International Arms Control: Issues and Agreement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4.
- Bodell, Nenne. “Annex A.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agreements.” *SIPRI Yearbook 2006*. Stockholm: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2006.
- The Bush Administration’s Nonproliferation Policy: Successes and Future Challenges*. Testimony by Under Secretary of State for Arms Control and International Security John Bolton to the House International Relations Committee. March 30, 2004.
- Cheon, Seonwhun. “North Korea and the ROK-U.S. security alliance.” *Armed Forces & Society*. Vol. 34, No. 1, October 2007.
- _____. *Cooperativ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Seoul: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006.
- ElBaradei, Mohamed. *The Challenges Facing Nonproliferation*. New York: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May 14, 2004.
- Perkovich, George *et al.* *Universal Compliance: A Strategy for*

Nuclear Security. Washington, D.C.: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June 2004.

Select Committee on Intelligence. *Report on the U.S. Intelligence Community's Prewar Intelligence Assessments on Iraq*. Washington, D.C.: the U.S. Senate, July 2004.

Wit, Joel *et al.* *The Six Party Talks and Beyond: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and North Korea*. Washington, D.C.: Th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2005.

Wit, Joel and Daniel Poneman and Robert Gallucci. "Seven lessons for dealing with today's North Korea nuclear crisis." *Arms Control Today*. April 2004.

Monitoring and Verification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GOV/2007/36.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July 3, 2007.

연구총서

2005-01	Toward Greater Transparency in Non-Nuclear Policy : A Case of South Korea	전성훈	저	7,000원
2005-02	유럽연합(EU)의 대북 인권정책과 북한의 대응	최의철	저	8,000원
2005-03	북한의 노동인권 개발체계: 형성과 변화	조정아	저	7,000원
2005-04	Energy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 Issues and Suggestions	김규륜	저	4,500원
2005-05	일본의 보수우경화와 국가안보전략	김영춘	저	5,000원
2005-06	북한주민의 국경이동 실태: 변화와 전망	이금순	저	6,500원
2005-07	북한 청소년의 교육권 실태: 지속과 변화	임순희	저	5,500원
2005-08	미·중 패권경쟁과 우리의 대응전략	황병덕	저	9,000원
2005-09	북한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남북 협력 방안 연구	김영운	저	7,000원
2005-10	청소년의 통일문제 관심 제고 방안	손기웅	저	5,500원
2005-11	러시아 탈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사회갈등	조한범	저	6,000원
2005-12	동북아협력의 인프라 실태: 국가 및 지역차원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13	북한의 형사법제상 형사처리절차와 적용실태	김수암	저	7,000원
2005-14	6·15 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협상 행태: 지속과 변화	허문영	저	7,500원
2005-15	북한체제의 분야별 실태평가와 변화전망 : 중국의 초기 개혁개방과정과의 비교분석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5-16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전망	조민	저	6,000원
2005-17	북한의 경제개혁과 이행	이석	저	7,000원
2005-18	북한의 산업구조 연구	최수영	저	5,500원
2005-19	탈냉전시대 전환기의 일본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배정호	저	6,500원
2005-20	부시행정부의 대북 핵정책 추진 현황과 전망	김국신	저	5,000원
2005-21	미국 외교정책에서의 정책연구기관(Think Tanks)의 역할과 한반도 문제	박영호	저	8,500원
2005-22	2005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23	미국과 중국의 대북 핵정책 및 한반도 구상과 한국의 정책공간	박형중	저	5,000원
2006-01	Cooperativ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전성훈	저	10,000원
2006-02	한반도 경제통합 모형의 이론적 모색	임강택	저	7,000원
2006-03	7·1조치 이후 북한의 농업개혁과 과제	최수영	저	5,000원
2006-04	북한경제의 대외의존성과 한국경제의 영향력	이석	저	8,000원
2006-05	동북아 경제·안보 협력의 연계: 4대 분야 협력체 형성 중심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06	북한체제의 내구력 평가	전현준 외	공저	10,000원
2006-07	북한 경제개혁의 실태와 전망에 관한 연구 -개혁의 부작용을 통해 본 북한 체제전환의 성공과제-	김영운	저	10,000원
2006-08	남북한 공유하천 교류협력 방안	손기웅	저	6,000원
2006-09	북한의 당·군·민 관계와 체제 안정성 평가	정영태	저	7,500원

2006-10	동북아 정세변화와 한국의 동북아 균형자 역할 연구	황병덕	저	8,500원
2006-11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의 신화화 연구	서재진	저	10,000원
2006-12	평화통일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조민	저	6,500원
2006-13	중국의 대북한 정책: 지속과 변화	최춘흠	저	5,000원
2006-14	한·미 안보관계의 변화와 북·미관계의 전망	박영호	저	7,000원
2006-15	동북아지역의 갈등·협력과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대외전략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6-16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 변화와 전망	임수희	저	8,000원
2006-17	개혁·개방과정에서 인권외제: 이론과 실제	이금순, 김수암	저	10,000원
2006-18	경제난 이후 북한 문학에 나타난 주민생활 변화	조정아	저	6,000원
2006-19	남남갈등해소방안 연구	조한범	저	5,000원
2007-01	남북한 재외동포정책과 통일과정에서 재외동포의 역할	최진욱	저	6,500원
2007-02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김수암	저	6,000원
2007-03	북한의 경제난과 체제 내구력	서재진	저	8,500원
2007-04	“확산방지구상”(PSI)과 한국의 대응	전성훈	저	10,000원
2007-05	통합정책과 분단국 통일: 독일사례	손기웅	저	7,000원
2007-06	새터민의 증언으로 본 북한의 변화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7-07	북·중 경제관계 확대와 대응방안	최수영	저	6,000원
2007-08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전략	허문영	외 공저	10,000원
2007-09	북한군대의 대내외 정세 인식 형성과 군대변화	정영태	저	6,000원
2007-10	평화변영정책 추진성과와 향후과제	허문영	외 공저	9,000원
2007-11	비교사회주의 측면에서 본 북한의 변화 전망 : 리비아와 쿠바 사례를 중심으로	정영태	외 공저	7,000원
2007-12	미·일동맹 강화에 따른 동북아정세 변화와 한국의 안보정책 대응전략	김국신	외 공저	8,500원
2007-13	아베정권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및 대북전략	배정호	저	6,000원
2007-14	중국의 대북 정책과 2·13합의에 대한 입장	최춘흠	저	5,000원
2007-15(1)	남북협력과 동북아협력 연계 추진방안	김규륜	외 공저	10,000원
2007-15(11)-1	동북아 지역협력의 새로운 연계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5(11)-2	New Linkages of North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5(11)-3	北東アジア地域協力の新たな連係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5(11)-4	東北亞區域合作的新聯係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6	남북 물류·운송 활성화 및 협력방안 연구	김영운	외 공저	8,000원
2007-17	북한의 통계: 가용성과 신뢰성	이석	저	8,500원
2007-18	북한 사회개발협력방안 연구	조한범	저	5,000원
2007-19	북한주민의 거주·이동: 실태 및 변화 전망	이금순	저	7,000원

학술회의총서

2005-01	북한 경제의 변화와 국제협력	8,000원
2005-02	6·15남북공동선언과 한반도 평화·번영: 평가와 전망	10,000원
2005-03	Infrastructure of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Current Status and Tasks	10,000원
2005-04	Implementing the Six-Party Joint Statement and the Korean Peninsula	10,000원



2005-05	북한 광물자원 개발 전망과 정책방안		10,000원
2006-01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전략		10,000원
2006-02	한반도 평화포럼: 구상과 이행		9,500원
2006-03	동북아구상과 남북관계 발전전략		10,000원
2006-04	Political Economy of the Northeast Asian Regionalism : Linkages between Economic and Security Cooperation		9,500원
2006-05	The North Korean Nuclear Test and The Future of Northeast Asia		7,000원
2007-01	2·13 합의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8,500원
2007-02	6·15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10,000원
2007-03	2007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변영: 평가와 전망		9,000원

협동연구총서

2005-01-01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유럽연합의 정책 사례	김명섭 외 공저	9,500원
2005-01-0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중·일 대중문화 교류의 현황 및 증진 방안 연구	문옥표 외 공저	10,000원
2005-01-03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를 위한 동남아시아 정치 사회 문화 인프라 연구	서중석 외 공저	9,000원
2005-01-04	동북아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전성훈 외 공저	10,000원
2005-01-05	동북아 한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5-01-06	동북아 지역인권체제(포럼) 구성 추진	최의철 외 공저	10,000원
2005-01-07	동북아공동체의 정책결정기구 구축에 관한 연구	윤종설 외 공저	10,000원
2005-01-0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개발 제도 및 인프라 분석과 공동체 형성 방향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5-01-0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지원방안 연구(II)	전재경 외 공저	10,000원
2005-01-10	변화하는 동북아 시대의 체계적인 국경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장준오 외 공저	8,000원
2005-01-1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	김이선 외 공저	10,000원
2005-01-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인프라 구축 연구	오해섭 외 공저	9,000원
2005-01-13	동북아시아 3국 학생 및 교원의 상호이해에 관한 의식조사 연구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5-08-01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10,000원
2005-08-02	남북한 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통일정책 거버넌스 구축방안	김국신 외 공저	10,000원
2005-08-03	통일관련 국민적 합의를 위한 종합적 시스템 구축방안 : 제도혁신과 가치합의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08-04	남북한 통합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확충방안	이철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5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구현방안	박광기 외 공저	10,000원
2005-08-06	남북한 경제통합의 인프라 확장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7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프로그램 연구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2005-08-08	종합결과보고서: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김영춘 외 공저	10,000원

2005-09-01	동북아 NGO 백서	전봉근 외 공저	10,000원
2005-09-02	동북아 NGO 연구총서	조한범 외 공저	10,000원
2006-04-01	2020 선진 한국의 국가전략 총괄편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04-02	2020 선진 한국의 국가전략(I): 안보전략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04-03	2020 선진 한국의 국가전략(II): 경제전략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11-01	한반도 평화-변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2	한반도 평화-변영 거버넌스의 분야별 현황과 과제		10,000원
2006-11-03	한반도 평화-변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상)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4	한반도 평화-변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중)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5	한반도 평화-변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하)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2-01	동북아 지역내 NGO 교류협력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방안(총괄편)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2-02	동북아 지역내 NGO 교류협력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방안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7-10-01	동북아 지역내 NGO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공저	6,000원
2007-10-02	한반도 통일대비 국내NGOs의 역할 및 발전방향	손기웅 외 공저	9,000원
2007-10-03	동북아 NGO 교류-협력의 인프라 개선과 NGO 네트워크의 활성화 방안	최대석 외 공저	7,500원
2007-11-01	한반도 평화-변영 거버넌스의 개선 및 활성화 방안 (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공저	10,000원
2007-11-02	한반도 평화-변영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위한 이론적 논의와 개념적 틀	임성학 외 공저	9,000원
2007-11-03	한반도 평화-변영을 위한 외교안보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배정호 외 공저	6,500원
2007-11-04	한반도 평화체제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함택영 외 공저	6,000원
2007-11-05	대북정책 참여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진성훈 외 공저	6,500원
2007-11-06	남북경협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김규륜 외 공저	8,000원
2007-11-07	남북한 사회문화 협력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7-11-08	한반도 평화-변영을 위한 로컬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를 중심으로	양현모 외 공저	7,500원
2007-11-09	한반도 평화교육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박광기 외 공저	8,500원

논총

통일정책연구, 제14권 1호 (200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4권 2호 (200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5권 1호 (2006)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5권 2호 (2006)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6권 1호 (2007)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6권 2호 (2007)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4, No. 1 (200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4, No. 2 (200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5, No. 1 (2006)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5, No. 2 (2006)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6, No. 1 (2007)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6, No. 2 (2007)	10,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5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5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6	임순희 외 공저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6	임순희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7	김수암 외 공저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7	김수암 외 공저	10,000원

독일통일백서

독일통일백서 2005	8,500원
-------------	--------

연례정세보고서

2005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5~2006	6,000원
2006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6~2007	6,000원

통일정세분석

비매품

2005-01	2005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및 정책 전망	이교덕, 서재진,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2005-02	북한의 경제개혁 동향	김영윤, 최수영
2005-03	북한의 「핵보유」 선언 배경과 향후 입장 전망	정영태
2005-04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 이후 주변 4국의 반응과 향후 정책 전망	박영호, 김영춘, 여인곤, 전병곤
2005-05	북한인권 관련 미 국무부 보고서 분석 및 정책전망	최의철, 김수암
2005-06	중국 10기전인대 제3차회의 결과 분석	전병곤
2005-07	일본의 보수우경화 동향분석	김영춘
2005-08	농업분야 대북 협력 방안	김영윤, 최수영
2005-09	2004년 북한 영양실태조사결과 보고서 분석	이금순, 임순희
2005-10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3차 회의 결과 분석	박형중, 최진욱
2005-11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안 채택을 중심으로	최의철, 임순희

2005-12	최근 중·일관계와 갈등요인 분석		배정호
2005-13	북한인권국제대회 동향과 향후 전망		김수암
2005-14	북한 주권국가 인정문제의 국제법적 조명: 동·서독 사례와 향후 통일정책 과제		황병덕
2005-15	동서독간 정치범 석방거래(Freikauf)		손기웅
2005-16	일본 총선 결과 분석		김영춘
2005-17	평화비용의 의미와 실익	김영윤, 이 석, 손기웅, 조 민, 서재진,	최수영
2005-18	미·일동맹의 강화와 주일미군의 재편		배정호
2005-19	주변4국과의 연쇄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박영호, 배정호,	최춘흠
2005-20	APEC 정상회의의 의의와 한국의 역할		김규륜
2006-01	2006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허문영, 서재진, 임강택, 전현준, 정영태,	최진욱
2006-02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 결산과 향후 한반도 정세 전망		전현준, 김영윤
2006-03	2005 국무부 연례각국인권보고서(북한부분) 분석		김수암, 이금순
2006-04	북·중관계 강화의 영향과 우리의 대응책	박종철, 김국신, 최수영, 허문영,	전병곤
2006-05	중·러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2006-06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제11기 4차 회의 결과분석		서재진, 김영윤
2006-07	주일미군 재편의 의미와 시사점		김국신, 배정호
2006-08	북한 「7·1경제관리개선조치」 4년의 평가와 전망		김영윤
2006-09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배정호
2006-10	아베 정권의 출범과 대한반도 정책 전망		박정호
2006-11	북한의 핵실험과 국제사회의 대응	김국신, 박영호, 배정호, 여인곤,	최춘흠
2006-12	미국 중간선거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6-13	APEC 정상회의의 결과분석		김규륜
2007-01	2007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허문영, 김영윤, 박영호, 서재진, 전현준,	정영태
2007-02	2·13 북핵 합의이후 북한정세와 남북관계 전망	여인곤, 이금순, 정영태, 조한범,	최수영
2007-03	2006 미 국무부 연례각국인권보고서(북한부분) 분석		김수암, 이금순
2007-04	‘2·13합의’ 전후의 북한동향	이교덕, 임순희, 정영태,	최수영
2007-05	부시 행정부의 북핵정책 변화 분석		전성훈
2007-06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제11기 제5차 회의 평가		최수영
2007-07	7·1조치 이후 5년, 북한경제의 변화와 과제		최수영
2007-08	상반기(07년 1월~6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정영태, 이교덕, 임순희,	최수영
2007-09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의 결과분석		김국신, 여인곤
2007-10	7·29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 분석		배정호
2007-11	북한의 「전국 당세포비서 대회」 개최 배경과 전망		정영태
2007-12	후쿠다 정권의 특징과 대외 및 대북전략		배정호
2007-13	러시아 총선(12·2) 결과분석		여인곤
2007-14	하반기(07년 7월~12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정영태, 이교덕, 임순희,	최수영

KINU정책연구시리즈

비매품

2005-01	북핵보유선언: 향후 정세전망과 우리의 정책방향	허문영
2005-02	북핵문제와 남북대화: 현안과 대책	이기동, 서보혁, 김용현, 이정철, 정영철, 전병곤, 곽진오
2005-03	6·15 남북공동선언 재조명: 이론과 실제	홍용표, 조한범



2005-04	광복 60년과 한반도: 한미관계, 남북관계 그리고 북핵문제	김근식
2005-05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로드맵: 「6자회담 공동성명」 이후의 과제	조성렬
2005-06	제4차 6자회담 합의 이행구도	전현준, 박영호, 최진욱, 이교덕, 조한범, 박종철
2006-01	남북한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	김영운
2006-02	2006년 QDR의 특징 분석과 한반도안보에 주는 시사점	박영호
2006-03	북한 개발협력을 위한 주요 쟁점과 정책 과제	임을출
2006-04	아시아 지역협력의 발전추세와 한국의 정책방향	김규륜
2006-05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과 우리의 정책방향	전현준
2006-06	국내외 북한인권 동향 평가와 인권개선 로드맵	서보혁
2006-07	북한군 최고사령관 위상 연구	고재홍
2006-08	평화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와 통일과정에서의 활용 방안	이현근
2006-09	김정일 정권의 정세인식: '선군'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전미영
2007-01	북핵 '2·13합의' 와 평화적인 핵폐기 사례 분석	전성훈
2007-02	2차 남북정상회담의 의의와 전망	조한범
2007-03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방안	김수암, 이금순, 최진욱, 서은성
2007-04	한미동맹 그리고 북한과 동북아 2001~2007년간의 회고와 한국의 정책 대안	박형중
2007-05	주변 4국의 대북정책 동향과 전망: '2·13 합의' 이후부터 남북정상회담까지를 중심으로	여인근, 김국신, 배정호, 최춘흠
2007-06	국제금융기구의 북한 개입: 조건, 시나리오 및 과제	임을출
2007-07	평화조약의 역사적 변천과 사례: 한반도평화체제에 주는 시사점	최진욱
2007-08	북핵 폐기 한반도 모델: 기본원칙과 추진방향	전성훈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비매품

-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1권 1호(2006)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1권 2호(2006)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2권 1호(2007)

월간 북한동향

비매품

- 2007 월간 북한동향 제1권 제1호 북한연구실

한반도 평화체제 연구총서

비매품

- 제1호 한반도 평화체제: 자료와 해제 허문영, 김수암, 여인근, 정영태, 조 민, 조정아

Studies Series

비매품

- 2005-01 Strategies for Development of a North Korean Special Economic Zone through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Kang-Taeg Lim & Sung-Hoon Lim

2005-02	The Food Crisis and the Changing Roles and Attitudes of North Korean Women	Lim Soon Hee
2005-03	Evaluation of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and Task for Success	Young-Yoon Kim
2005-04	North Korea's Market Economy Society from Below	Jae Jean Suh
2005-05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wer Structure and the Role of Party Organizations under the Kim Jong-il's Reign	Hyeong-Jung Park and Kyo-Duk Lee
2005-06	The DPRK Famine of 1994-2000: Existence and Impact	Suk Lee
2006-01	The North Korean Penal Code, Criminal Procedures, and their Actual Applications	Kim Soo-Am
2006-02	North Korea's Negotiation Behavior toward South Korea :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st Inter-Korean Summit Era	Huh, Moon-Young
2006-03	The Establish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Outlook for Unification	Cho, Min
2006-04	A Study on the structure of industry in North Korea	Choi, soo-young
2006-05	The Border-crossing North Koreans: Current Situations and Future Prospects	Keumsoon Lee
2006-06	North Korea's Human Resource Development System	Cho, Jeong-Ah
2007-01	Value Changes of the North Korean New Generation and Prospects	Lim, Soon-Hee
2007-02	North Korea's Civil-Military-Party Relations and Regime Stability	Jeung, Young-Tai
2007-03	An Assessment of the North Korean System's Durability	Chon, Hyun-Joon, Huh, Moon-Young, Kim, Philo, Bae, Chin-Soo
2007-04	A Study on the Reality and Prospect of Economic Reform in North Korea : Tasks for Successful Transformation of the North Korean System	Kim, Young-Yoon
2007-05	North Korea's Agricultural Reforms and Challenges in the wake of the July 1 Measures	Choi, Soo Young
2007-06	The Changes of Everyday Life in North Korea in the Aftermath of their Economic Difficulties	Cho, Jeong-Ah

■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논총, 영문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①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② 본원 홈페이지(<http://www.kinu.or.kr>)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금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2) 연 회 비: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기관회원 20만원, 일반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신한은행 온라인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을 발송)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연평균 30-35권), 학술회의 총서(연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연평균 5-10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난자료를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단, 비영리에 한함)
- 5) 저작권과 관련하여 DB서비스를 통해 압축한 자료는 제3자 양도 및 판매를 금합니다.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우편번호: 142-728)
(전화: 901-2559, 901-2529 FAX: 901-2547)

이 책은 국제산림경영인증(FSC)마크를 획득한 무염소 펄프 친환경용지 띠도레도(표지)와 이라이트지(본문용지)를 사용하였으며 환경에 유해한 코팅을 하지 않았습니다.

www.kinu.or.kr

북핵 폐기 한반도 모델: 기본원칙과 추진방향

■ 전 성 훈 (全星勳)

캐나다 워털루대 경영과학 박사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통일부 남북관계발전위원
과학기술부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무위원
자유아시아방송(RFA) 한반도 문제 논설자문위원

「“확산방지구상”(PS)과 한국의 대응」 (2007)
「North Korea and the ROK-US Security Alliance」 (2007)
「북핵 폐기 로드맵 (2008-2012): 향후 5년 간의 예상과 우리의 대응」 (2007)
「Cooperativ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2006)

